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 | |
|----------------|-------|
| 선 람 | 기관의 장 |
| | |

제2797호 2021. 6. 18.(금)

www.jeonbuk.go.kr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1-194호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계획 변경 고시 1
- 전라북도 고시 제2021-195호 대광계천, 안정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3
- 전라북도 고시 제2021-196호 대광계천, 안정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4
- 전라북도 고시 제2021-197호 대광계천, 안정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7
- 전라북도 고시 제2021-198호 구천동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9
- 전라북도 고시 제2021-199호 구천동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10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00호 구천동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3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01호 오암지구 다목적농촌융수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 변경고시 15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21호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7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22호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8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47호 공인 폐기 공고 19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48호 공인 등록 공고 20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50호 전북 탄소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21
-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91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24

시군행정

- 군산시 고시 제2021-82호 미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5
- 익산시 공고 제2021-158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68
- 김제시 공고 제2021-529호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69

| | | | | | | | | | |
|-----------|--|--|--|--|--|--|--|--|--|
| 회람 | | | | | | | | | |
|-----------|--|--|--|--|--|--|--|--|--|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고시 제2021-194호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계획 변경 고시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계획 변경에 의하여 어촌·어항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6월 18일

■ 고 시 사 항

- ① 어항명칭 : 방축도항
- ② 어항종류 : 지방어항
- ③ 어항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 ④ 어항구역 : 방과제 시점 서측 200m 지점(N : 35°50' 40.4", E : 126°22' 40.2")으로부터 SE방향으로 430m, NE방향으로 410m 이동하여 동방과제 두부 NE방향으로 280m지점 육지부와 접속한(N : 35°50' 46.3", E : 126°23' 01.5")선내 구역
- ⑤ 어항개발계획 변경 내용

| 구 분 | 사 업 량 | | 비 고 |
|--------|----------------------|---------------------|-----------------------|
| | 당 초 | 변 경 | |
| 서방과제 | 135m | 117m | △ 18m |
| 남방과제 | 35m | 35m | - |
| 과제제 | 40m | 93.74m | 증 53.74m |
| 물 양 장 | 208m | 208m | - |
| 기존호안보강 | 147m | 143.1m | △ 3.9m |
| 준설 | 10,543m ³ | 9,225m ³ | △ 1,318m ³ |
| 경사식선착장 | - | 77.5m | 신규 설치 |

□ 연차별 투자계획(당초)

(단위:백만원)

| 연차별 사업별 | 총 계획 | | 2007년~2014년 |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2018~2020년 | |
|------------|----------------------|--------|---------------------|-------|-------|-------|-------|-----|---------------------|-------|------------|-------|
|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계 | | 15,622 | | 8,372 | | 1,293 | | 700 | | 1,500 | | 3,757 |
| 서방과제 | 135m | 8,227 | 73m | 3,652 | 20m | 1,293 | | | | | 42m | 3,282 |
| 남방과제 | 35m | 674 | 35m | 674 | | | | | | | | |
| 과제제 | 40m | 700 | | | | | 40m | 700 | | | | |
| 물양장 | 208m | 4,058 | 134m | 2,483 | | | | | 50m | 1,100 | 24m | 475 |
| 기존호안보강 | 147m | 1,163 | 147m | 1,163 | | | | | | | | |
| 준설,기타 | 10,543m ³ | 800 | 2,010m ³ | 400 | | | | | 8,533m ³ | 400 | | |

□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단위:백만원)

| 연차별 사업별 | 총 계획 | | 2007년~2014년 |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2018~2021년 | |
|------------|---------------------|--------|---------------------|-------|-------|-------|-------|-----|---------------------|-------|------------|-------|
|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계 | | 17,265 | | 8,372 | | 1,293 | | 700 | | 1,500 | | 5,400 |
| 서방과제 | 117m | 6,472 | 73m | 3,652 | 20m | 1,293 | | | | | 24m | 1,527 |
| 남방과제 | 35m | 674 | 35m | 674 | | | | | | | | |
| 과제제 | 93.74m | 1,500 | | | | | 40m | 700 | | | 53.74m | 800 |
| 물양장 | 208m | 4,058 | 134m | 2,483 | | | | | 50m | 1,100 | 24m | 475 |
| 기존호안보강 | 143.1m | 1,163 | 143.1m | 1,163 | | | | | | | | |
| 준설,기타 | 9,225m ³ | 800 | 2,010m ³ | 400 | | | | | 7,215m ³ | 400 | | |
| 경사식선착장 | 77.5m | 2,598 | | | | | | | | | 77.5m | 2,598 |

⑥ 관계서류 열람장소 : 군산시 항만해양과

전라북도 고시 제2021-195호

대광계천, 안정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하천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광계천, 안정천의 하천구간을 지정(변경)하고 「하천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6월 18일

1. 하천의 지정(변경) 내역

| 구분 | 하천명 | 하천 등급 | 하천의 구간 | | | | | | | | 하천 연장 (km) | 결정 (변경)일 |
|----|------|----------|--------|-----|-----|-----------------|-----|-----|-----|------------------------------------|------------------|-------------------------|
| | | | 기 점 | | | | 종 점 | | | | | |
| | |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경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경계 | | |
| 당초 | 대광계천 | 지방 | 전북 | 부안 | 하서 | 백련리 896번지선 | 전북 | 부안 | 하서 | 백련리 하서 해안 | 3.00 | 1982.10.11. (전북260호) |
| 변경 | | | 전북 | 부안 | 하서 | 백련리 847-1번지선 | 전북 | 부안 | 하서 | 백련리 새만금관광레저용지 대광계승수로 경계 | 1.84 | 2021.6.18 |
| 당초 | 안정천 | 지방 | 전북 | 진안 | 주천 | 운봉리 277번지선 | 전북 | 진안 | 용담 | 와룡리 금강 (지방) 합류점 | 5.00 | 1982.10.11. (전북260호) |
| 변경 | | | 전북 | 진안 | 주천 | 운봉리 277번지선 | 전북 | 진안 | 주천 | 운봉리 66-3번지선 금강(국가하천- 용담호) 경계 | 3.20 | 2021.6.18 |

2. 지정(변경) 사유

하천의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구간의 조사 및 측량 결과에 따른 지정(변경)

전라북도 고시 제2021-196호

대광계천, 안정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수립한 「대광계천, 안정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6월 18일

1. 수립목적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금회수립 대상범위

| 수계명 | 하천명 | 하천 등급 | 하 천 의 구 간 | | 연장 (km) | 비고 |
|-----|------|-------|-------------------------|--|---------|---------------------------------|
| | | | 기 점 | 종 점 | | |
| 서해 | 대광계천 | 지방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896번지선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하서 해안 | 3.00 | 전북260호 (1982.10.11.) |
| | |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847-1번지선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하서 해안 | 3.00 | 전라북도 고시 제2005-229호 (2005.09.16) |
| | |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847-1번지선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새만금관광레저용지 대광계승수로 경계 | 1.84 | 재수립 |
| 금강 | 안정천 | 지방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277번지선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와룡리 금강(지방) 합류점 | 5.00 | 전북260호 (1982.10.11.) |
| | |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277번지선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66-3번지선 (용담댐 수몰지) | 3.20 | 전라북도 고시 제2008-34호 (2008.02.22) |
| | |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277번지선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66-3번지선 (금강(국가하천)-용담호 구간) | 3.20 | 재수립 |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족량에 관한 사항

| 하천명 | 유역 면적 (km ²) | 수자원 총량 (백만m ³) | 기 준 갈수량 (m ³ /s) | 저수량 (m ³ /s) | 유출량(백만m ³) | | | 손실량 (백만m ³) |
|------|--------------------------------|----------------------------------|-----------------------------------|----------------------------|------------------------|------|-------|----------------------------|
| | | | | | 홍수기 | 평상시 | 계 | |
| 대광계천 | 2.97 | 3.58 | 0.0104 | 0.0111 | 1.74 | 0.75 | 2.49 | 1.09 |
| 안정천 | 16.59 | 21.15 | 0.0613 | 0.0552 | 10.65 | 4.15 | 14.80 | 6.35 |

주) 기준갈수량은 「하천수 사용허가 업무매뉴얼(2009. 09, 국토해양부)」 및 금회 계획하천의 면적비 적용

4. 정비계획

| 하천명 | 하천연장 (km) | 하천기본계획(km) | | 하천정비(km) | | | | 비 고 |
|------|--------------|------------|------|----------|----------|----------|---------------|-----|
| | | 수립 | 미수립 | 합계 | 완료 구간 | 필요 구간 |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 |
| 대광계천 | 1.84 | 1.84 | 0.00 | 3.68 | 0.00 | 2.26 | 1.42 | |
| 안정천 | 3.20 | 3.20 | 0.00 | 6.40 | 0.05 | 4.18 | 2.17 | |

주) 하천연장, 하천기본계획 수립연장은 한국하천일람(2018, 국토교통부)기준
하천정비현황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수립 연장의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하천명 | 주요지점명 | 유역 면적 (km ²) | 계 획 규모 (년) | 기 본 홍수량 (m ³ /s) | 계획홍수량 (m ³ /s) | |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
|------|--------------------------|--------------------------------|------------------|-----------------------------------|------------------------------|------|--|
| | | | | | 하도분담 | 유역분담 | |
| 대광계천 | 대광계천 종점 (No.0+000) | 2.97 | 50 | 68 | 68 | - | - |
| | 치상교 지점 (No.0+586) | 2.52 | " | 62 | 62 | - | - |
| | 대광계 제3교 지점 (No.1+287) | 2.01 | " | 53 | 53 | - | - |
| | 과업 지점 (No1+840) | 1.61 | " | 46 | 46 | - | - |
| 안정천 | 안정천 종점 (No.0+000) | 16.59 | 50 | 258 | 264 | - | - |
| | 하양명소하천 합류후 (No.0+370) | 16.32 | " | 264 | 264 | - | - |
| | 하양명소하천 합류전 (No.0+400) | 9.20 | " | 151 | 151 | - | - |
| | 연하소하천 합류후 (No.1+430) | 7.93 | " | 140 | 140 | - | - |
| | 연하소하천 합류전 (No.1+480) | 5.78 | " | 101 | 101 | - | - |
| | 지류① 합류전 (No.2+520) | 4.41 | " | 82 | 82 | - | - |
| | 과업 지점 (No.3+202) | 3.32 | " | 63 | 63 | - | - |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 하천명 | 측점 (No.) | 누가 거리 (m) | 계 획 홍수량 (m ³ /s) | 계 획 홍수위 (EL.m) | 계 획 규모 (년) | 하폭 (m) | | 기설제방고 (EL.m) | | 비 고 |
|------|-------------|-----------------|-----------------------------------|----------------------|------------------|-----------|----|-----------------|--------|-----------|
| | | | | | | 현재 | 계획 | 좌안 | 우안 | |
| 대광계천 | 0+000 | 0 | 68 | 2.08 | 50 | 25 | 25 | 2.40 | 2.94 | 대광계천 종점 |
| | 0+109 | 109 | 68 | 3.14 | " | 13 | 19 | 5.64 | 5.64 | 백연교 |
| | 0+586 | 586 | 68 | 9.94 | " | 12 | 18 | 11.08 | 11.08 | 치상교 |
| | 1+125 | 1,125 | 62 | 17.56 | " | 9 | 13 | 18.43 | 17.71 | 대광계 제1낙차공 |
| | 1+287 | 1,287 | 62 | 21.07 | " | 11 | 15 | 21.90 | 22.15 | 대광계 제3교 |
| | 1+840 | 1,840 | 53 | 33.97 | " | 15 | 15 | 35.16 | 35.07 | 과업의 시점 |
| 안정천 | 0+000 | 0 | 264 | 267.12 | 50 | 42 | 42 | 268.78 | 266.59 | 안정천 종점 |
| | 0+400 | 400 | 151 | 271.84 | " | 23 | 34 | 270.46 | 270.60 | 하양명소하천 합류 |
| | 0+539 | 539 | 151 | 272.48 | " | 15 | 30 | 274.32 | 274.32 | 운봉교 |
| | 1+480 | 1,480 | 101 | 287.26 | " | 11 | 23 | 287.55 | 286.43 | 연하소하천 합류 |
| | 2+520 | 2,520 | 82 | 305.92 | " | 17 | 21 | 306.95 | 306.09 | 지류① 합류 |
| | 2+809 | 2,809 | 82 | 314.06 | " | 21 | 21 | 315.97 | 315.97 | 노적교 |
| | 3+202 | 3,202 | 82 | 329.45 | " | 24 | 24 | 329.14 | 330.00 | 과업 시점 |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 하천명 | 구간(No.) | 좌·우안 구분 | 지구구분 | 연장(m) | 면적(m ²) |
|------|-------------|------------|--------|-------|---------------------|
| 대광계천 | 0+000~0+748 | 우 | 복원지구 | 0.75 | 9,322 |
| | 0+000~1+840 | 좌 | 복원지구 | 1.84 | 22,820 |
| | 0+748~1+120 | 우 | 일반보전지구 | 0.37 | 4,025 |
| | 1+120~1+840 | 우 | 복원지구 | 0.72 | 8,491 |
| 안정천 | 0+000~0+218 | 좌 | 일반보전지구 | 0.22 | 4,615 |
| | 0+000~0+368 | 우 | 일반보전지구 | 0.37 | 15,809 |
| | 0+218~3+202 | 좌 | 복원지구 | 2.98 | 54,644 |
| | 0+368~1+970 | 우 | 복원지구 | 1.60 | 28,904 |
| | 1+970~2+191 | 우 | 일반보전지구 | 0.22 | 1,964 |
| | 2+191~3+202 | 우 | 복원지구 | 1.01 | 18,768 |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공항하천과 또는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진안군청 안전재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197호

대광계천, 안정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공항하천과), 부안군청(안전총괄과), 진안군청(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6월 18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대광계천, 안정천 2개 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일 : 2021. 6. 18
3. 지정 사유 : 하천기본계획 수립(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의 지정(변경)
4. 하천 구간

| 하천명 | 하 천 구 간 | | | 면적 (m ²) | 결정 사유 |
|------|--|--|--------|-------------------------|------------|
| | 기 점 | 종 점 | 거리(km) | | |
| 대광계천 | 4개 지구(좌안 - 2개 지구, 우안 - 2개 지구) | | 3.680 | 44,657 | |
|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808-3번지선(No.0+586)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새만금관광레저용지 대광계승수로 경계(No.0+000) | 0.586 | 7,296 | 기본계획 수립 |
|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198-12번지선(No.1+840)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808-3번지선(No.0+586) | 1.254 | 15,952 | 기본계획 수립 |
| | 좌안부 소계 | | 1.840 | 23,248 | 2지구 |
|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809-2번지선(No.0+586)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새만금관광레저용지 대광계승수로 경계(No.0+000) | 0.586 | 7,287 | 기본계획 수립 |
|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198-12번지선(No.1+840)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809-2번지선(No.0+586) | 1.254 | 14,122 | 기본계획 수립 |
| | 우안부 소계 | | 1.840 | 21,409 | 2지구 |

| 하천명 | 하 천 구 간 | | | 면적 (m ²) | 결정 사유 |
|-----|--|-------------------------------------|--------|-------------------------|------------|
| | 기 점 | 종 점 | 거리(km) | | |
| 안정천 | 4개지구 (좌안 - 2개 지구, 우안 - 2개 지구) | | 6.404 | 124,704 | |
|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349번지선(No.1+775)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66-3번지선(No.0+000) | 1.775 | 32,792 | 기본계획 수립 |
|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산119-13번지선(No.3+202)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349번지선(No.1+775) | 1.427 | 26,466 | 기본계획 수립 |
| | 좌안부 소계 | | 3.202 | 59,258 | 2지구 |
|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338번지선(No.1+775)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43-1번지선(No.0+000) | 1.775 | 43,023 | 기본계획 수립 |
|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산119-13번지선(No.3+202)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338번지선(No.1+775) | 1.427 | 22,423 | 기본계획 수립 |
| | 우안부 소계 | | 3.202 | 65,446 | 2지구 |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열람장소 : 전라북도 공향하천과, 부안군 안전총괄과,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전라북도 고시 제2021-198호

구천동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하천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구천동천의 하천구간을 지정(변경)하고 「하천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6월 18일

1. 하천의 지정(변경) 내역

| 구분 | 하천명 | 하천 등급 | 하천의 구간 | | | | | | | | 결정 (변경)일 | |
|----|------|----------|--------|-----|-----|---------------|-----|-----|-----|---------------------------------|-------------|-------------------------|
| | | | 기 점 | | | | 종 점 | | | | | 하천 연장 (km) |
| | |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경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경계 | | |
| 당초 | 구천동천 | 지방 | 전북 | 무주군 | 설천면 | 삼공리 883번지선 | 전북 | 무주군 | 설천면 | 삼공리 원당천(지방) 합류점 | 4.00 | 1982.10.11. (전북260호) |
| 변경 | | | 전북 | 무주군 | 설천면 | 삼공리 888번지선 | 전북 | 무주군 | 설천면 | 삼공리 348-10번지선 원당천(지방) 합류점 | 4.16 | 2021.06.18 |

2. 지정(변경) 사유

하천의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구간의 조사 및 측량 결과에 따른 지정(변경)

전라북도 고시 제2021-199호

구천동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수립한 「구천동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6월 18일

1. 수립목적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금회수립 대상범위

| 수계명 | 하천명 | 하천 등급 | 하 천 의 구 간 | | 연장 (km) | 비고 |
|-----|----------|----------|--------------------------|---|------------|-------------------------------------|
| | | | 기 점 | 종 점 | | |
| 금강 | 구천 동천 | 지방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54번지선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원당천(지방)합류점 | 1.97 | 2015.01.16. (제2015-1호) (최초수립) |
| | |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888번지선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48-10번지선 원당천(지방)합류점 | 4.16 | 재수립 |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 하천명 | 유역 면적 (km ²) | 수자원 총량 (백만m ³) | 기 준 갈수량 (m ³ /s) | 저수량 (m ³ /s) | 유출량(백만m ³) | | | 손실량 (백만m ³) |
|----------|--------------------------------|----------------------------------|-----------------------------------|----------------------------|------------------------|-------|-------|----------------------------|
| | | | | | 홍수기 | 평상시 | 계 | |
| 구천 동천 | 23.67 | 29.74 | 0.0938 | 0.1240 | 16.58 | 11.85 | 28.43 | 13.16 |

4. 정비계획

| 하천명 | 하천연장 (km) | 하천기본계획(km) | | 하천정비(km) | | | | 비 고 |
|------|--------------|------------|-----|----------|----------|----------|---------------|-----|
| | | 수립 | 미수립 | 합계 | 완료 구간 | 필요 구간 |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 |
| 구천동천 | 4.16 | 4.16 | - | 8.32 | - | 4.16 | 4.16 | |

주) 하천정비현황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수립연장의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하천명 | 주요지점명 | 유역 면적 (km ²) | 계획 규모 (년) | 기 본 홍수량 (m ³ /s) | 계획홍수량 (m ³ /s) | |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
|----------|---------------------------|--------------------------------|-----------------|-----------------------------------|------------------------------|------|---|
| | | | | | 하도분담 | 유역분담 | |
| 구천 동천 | 원당천(지방) 합류점 (No.0+00) | 23.67 | 50년 | 268 | 268 | - | - |
| | 구천교 지점 (No.0+263) | 23.65 | 50년 | 268 | 268 | - | - |
| | 지류 합류점 (No.0+850) | 22.89 | 50년 | 268 | 268 | - | - |
| | 위도시천(소)합류점 (No.1+950) | 21.43 | 50년 | 268 | 268 | - | - |
| | 석대천(소)합류점 (No.2+700) | 19.84 | 50년 | 263 | 263 | - | - |
| | 배나무골천(소)합류점 (No.4+160) | 11.45 | 50년 | 253 | 253 | - | - |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 하천명 | 측점 (No.) | 누가 거리 (m) | 계 획 홍수량 (m ³ /s) | 계 획 홍수위 (EL.m) | 계 획 규모 (년) | 하폭 (m) | | 시설제방고 (EL.m) | | 비 고 |
|----------|-------------|-----------------|-----------------------------------|----------------------|------------------|-----------|----|-----------------|--------|-----------------|
| | | | | | | 현재 | 계획 | 좌안 | 우안 | |
| 구천 동천 | 0+000 | 0 | 268 | 571.08 | 50 | 38 | 38 | 571.09 | 571.77 | 원당천(지방) 합류점 |
| | 0+263 | 263 | 268 | 575.36 | 50 | 21 | 21 | 577.90 | 577.90 | 구천교 지점 |
| | 0+850 | 850 | 268 | 588.95 | 50 | 22 | 33 | 588.27 | 590.08 | 지류 합류점 |
| | 1+950 | 1,950 | 268 | 608.27 | 50 | 54 | 54 | 612.30 | 614.36 | 위도시천(소) 합류점 |
| | 2+750 | 2,750 | 263 | 638.27 | 50 | 26 | 26 | 산 | 640.27 | 석대천(소) 합류점 |
| | 4+159 | 4,159 | 253 | 697.91 | 50 | 18 | 18 | 697.78 | 697.78 | 배나무골천 (소)합류점 |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 하천명 | 구 간(No.) | 좌·우안구분 | 지구 구분 | 연장(m) | 면적(㎡) |
|------|-------------------------|--------|--------------|-------|--------|
| 구천동천 | 0+000~0+263 | 좌안1 |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 263 | 6,856 |
| | 0+263~0+870 | 좌안2 |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 607 | 5,012 |
| | 0+870~1+209 | 좌안3 |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 339 | 883 |
| | 1+209~1+523 | 좌안4 | 복원지구 | 314 | 4,162 |
| | 1+523~1+967 | 좌안5 |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 444 | 4,912 |
| | 1+967~4+159 | 좌안6 |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 2,192 | 26,171 |
| | 좌안부 (No.0+000~No.4+159) | | | 4,159 | 47,996 |
| | 0+000~0+263 | 우안1 | 복원지구 | 263 | 2,024 |
| | 0+263~0+945 | 우안2 |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 682 | 5,594 |
| | 0+945~1+118 | 우안3 |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 173 | 1,101 |
| | 1+118~1+523 | 우안4 |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 405 | 4,739 |
| | 1+523~1+985 | 우안5 |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 462 | 5,387 |
| | 1+985~4+159 | 우안6 |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 2,174 | 29,390 |
| | 우안부 (No.0+000~No.4+159) | | | 4,159 | 48,235 |
| | 합계 | | | 8,318 | 96,231 |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공항하천과 또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200호

구천동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공항하천과), 무주군청(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6월 18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구천동천
2. 하천구역 지정일 : 2021. 6. 18
3. 지정 사유 :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하천구역의 지정
4. 하천 구간

| 하천 명 | 하 천 구 간 | | | 면적 (m ²) | 결정 사유 | |
|----------|---|---|--------|-------------------------|--------------|-----|
| | 기 점 | 종 점 | 거리(km) | | | |
| 구천 동천 | 9개 지구(좌안 - 4개 지구, 우안 - 5개 지구) | | | | 182,227 | |
|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33-3번지(NO. 0 + 250)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280번지(NO. 0 + 000) | 0.250 | 77,673 | 기본계획 재 수립 | |
|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15-3번지(NO. 1 + 135)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11-23번지(NO. 0 + 250) | 0.885 | 991 | 기본계획 재 수립 | |
|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942-16번지(NO. 1 + 525)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942-10번지(NO. 1 + 135) | 0.390 | 1,880 | 기본계획 재 수립 | |
|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1번지(NO. 4 + 159)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942-15번지(NO. 1 + 525) | 2.634 | 55,077 | 기본계획 재 수립 | |
| | 좌안부 소계 | | | 4.159 | 135,621 | 4지구 |

| 하천명 | 하 천 구 간 | | | 면적 (㎡) | 결 정 사유 |
|------|---|---|--------|-----------|---------------|
| | 기 점 | 종 점 | 거리(km) | | |
| 구천동천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37번지(NO. 0 + 375)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48-10번지(NO. 0 + 000) | 0.375 | 1,136 | 기본계획 재 수 립 |
|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04-1번지(NO. 0 + 580)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60-2번지(NO. 0 + 375) | 0.205 | 1,103 | 기본계획 재 수 립 |
|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957-2번지(NO. 0 + 930)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06번지(NO. 0 + 580) | 0.350 | 1,929 | 기본계획 재 수 립 |
|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18-25번지(NO. 1 + 530)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957-4번지(NO. 0 + 930) | 0.600 | 4,023 | 기본계획 재 수 립 |
|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97번지(NO. 4 + 159)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519-7번지(NO. 1 + 530) | 2.629 | 38,415 | 기본계획 재 수 립 |
| | 우안부 소계 | | | 4.159 | 46,606 |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열람장소 : 전라북도 공항하천과, 무주군 안전재난과

전라북도 고시 제2021 - 201호

오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 변경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6-213(2016.11.04)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의거 승인된 오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6월 18일

1. 사업명 : 오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 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봉천·오암·오산리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 농업생산기반 확충 등
4. 수혜면적 : 89.3ha
5. 사업개요 : 수원공2개소, 이설도로2조, 송수관로2조 2.75km, 용수로조5.35km
 - 오촌제 : 규모 L=125.3m, H=28.3m 이설도로 2조 L=0.57
 - 오산양수장 : 1식(곡답저류지 증설 L=140.0m, H=9.2m, 수중모터 65kw×2대
 - 용수로 : 14조 L=5.35km
6. 사업기간 : 2016.12 ~ 2021.12.
7. 총사업비 : 12,756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9.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지역개발부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덧붙임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토지)

사업명 : 오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연번 | 토 지 소 재 지 | | | 편입 지번 | 지목 | 편 입 면적(m ²) | 소 유 자 | | 관계인 | | | 비고 (지분) |
|----|-----------|----|----|----------|----|----------------------------|--------------------------|-----|-------------|--------------|----|------------|
| | 군 | 면 | 리 | | | | 주 소 | 성 명 | 성명 또는 명칭 | 권리의 종류및내용 | 주소 | |
| 1 | 임실 | 오수 | 오암 | 686-2 | 답 | 10 |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307 | 김길례 | | | | 2/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21호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해당사업자에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6월 18일

□ 공고사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영업정지, 등록말소 | | | | | |
| 2. 수신처 | 성명(명칭) | (유)신화종합건설 | | | | |
| |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54, 2층 | | | | |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후 보완자료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완자료 제출 : “미제출” ※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제3의2호」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처분 종료일기준 30일 이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사 명 : 대산 독산지구 경지정리사업 - 발 주 처 : 남원시 - 하도급사(건설기계임대) : 진보건설기계 외 5 ○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사 명 : 대산 독산지구 경지정리사업 - 발 주 처 : 남원시 - 하도급사(건설기계임대) : 진보건설기계 외 5 - 총미수금 : 38,005,000원 | | | | |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건설업 영업정지, 등록말소(토목공사업 05-0048) | | | | | |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제1항, 법 제83조제3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68조의3, 제82조 제1항 제8호 | | | | | |
| 6. 청 문 실 시 | 기관명 | 전라북도 | 부서명 | 지역정책과 | 담당자 | 장우석 |
|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25 | | | 전화번호 | 280-4455 |
| | 일시 | 2021년 7월 6일 15:30부터 16:00분까지(30분) | | | | |
| | 장소 | 전북도청 상설청문장(1층)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 | | | | |
| | 주제자 | 소속 및 직위 | | 전라북도 청문관 | | |
| | 성명 | 이동현 | | | |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22호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해당사업자에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6월 18일

□ 공고사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등록말소 | | | | | |
| 2. 수신처 | 성명(명칭) | ㈜록산글로벌 | | | | |
| |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용와로 124 | | | | |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후 보완자료 미제출 - 보완자료 제출 : “미제출”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제3의2호」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처분 종료일기준 30일 이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 | | | |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건설업 등록말소 (토목건축공사업 14-0147) | | | | | |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제1항, 법 제83조제3호 | | | | | |
| 6. 청 문 실 시 | 기관명 | 전라북도 | 부서명 | 지역정책과 | 담당자 | 장우석 |
|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25 | | | 전화번호 | 280-4455 |
| | 일시 | 2021년 7월 6일 16:00부터 16:30분까지(30분) | | | | |
| | 장소 | 전북도청 상설청문장(1층)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 | | | | |
| | 주제자 | 소속 및 직위 | | 전라북도 청문관 | | |
| | 성명 | | 이동현 | | |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4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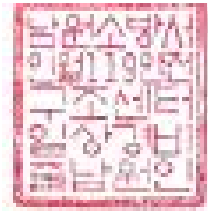

공인 폐기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6월 18일

공인의 등록

- 1. 공인폐기 사유 : 부서명 변경
- 2. 공인의 폐기일 : 2021년 6월 15일
- 3.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등 록 공 인 | | |
|---------|--------------------------|---|
| 공 인 명 | | 인 영 |
| 남원소방서 | 남원소방서인월119안전구조센터장인 |  |
| | 남원소방서인월119안전구조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  |
| 남원소방서 | 남원소방서인월119안전구조센터민원전용인 |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48호

공인 등록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6월 18일

공인의 등록

- 1. 공인등록 사유 : 부서명 변경
- 2. 공인의 개시일 : 2021년 6월 15일
-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등 록 공 인 | | |
|---------|------------------------|---|
| 공 인 명 | | 인 영 |
| 남원소방서 | 남원소방서인월119안전센터장인 |  |
| | 남원소방서인월119안전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50호

전북 탄소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전북 탄소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전라북도지사

1. 목적 : 규제자유특구 실증 추진을 위한 ‘전북 탄소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기업 및 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2. 일시 : 2021. 7. 7.(수) 10:30
3. 장소 : 그랜드힐스턴호텔(5층, 전주시 완산구 서곡5길 22-5)
4. 특구 개요
 - 가. (명칭) 전북 탄소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 나. (목적)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인 탄소산업의 육성과 제품의 시장창출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다. (위치) 전북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 및 군산 국가산업단지 등
 - 라. (면적) 총 177.13km² 및 도로 100.8km
 - 마. (지정기간) 2020.8. ~ 2024. 7.(4년)
 - 바. (실증특례) ①탄소복합재 소형 선박제조 및 운항 실증, ②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③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제조 및 소방 특장차 실증
- 사. (특구사업 내용)
 - (탄소복합재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운항실증) 안전에 취약한 FRP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CFRP 보강재를 적용하여 소형어선(10톤이하)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실증특례를 통해 구조 안전성 검증 및 상용화
 - (탄소복합재 용기를 적용한 대용량 압축수소 운송용 수소트류트레일러 운항실증) 수소운송용 탄소복합재 용기의 제조시설 검사기준이 450기압, 450L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규정을 초과하는 525기압 570리터급 제품에 대한 실증특례를 통해 상용화 및 경쟁력 확보

- (3,400리터급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탱크를 적용한 소방특장차 운행실증) 기존 스틸 재질의 소방펌프차 물탱크를 탄소복합재로 제작하여 용수 용량을 추가 확보(400리터)함으로, 화마 대응시간을 늘리고 국민의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 최소화

5. 특구 계획 변경(안) 내용

| 구분 | 당 초 | | 변 경 | | 비 고 (사 유) |
|--|----------------|--------|-----------------|--------|---------------------------|
| 특 구 사 업 자 | 기업명 | 대표자 | 기업명 | 대표자 | 기업명· 대표자 변경 |
| | 일진복합소재㈜ | 김기현 | 일진하이솔루스 주식회사 | 안홍상 | |
| 실 증 내 용 (고압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 ■ 수소이송용기 제조 사양 | | | | 운송량 증대를 통한 제품 고 부가화 |
| | 압력(기압) | 체적(리터) | 압력(기압) | 체적(리터) | |
| | 525 | 520 | 525 | 570 | |

6. 참석대상 : 지역 주민, 관련 기업, 이해관계자 등

7. 발표자 : 발표 신청자, 관련 전문가 중 지명 또는 위촉

○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21. 7. 5.(월) 까지 발표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비치된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의견제출

-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및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참석을 못하는 주민 등은 의견을 우편,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1. 7. 5.(월)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방문/ 우편 / e-mail 제출
- 문의 및 제출처 : 전라북도 탄소융복합과(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sjas1225@korea.kr, 063-280-2356)

[서식]

| | | | |
|---------------------------------------|--|-----|--|
|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의견서 | | | |
| 주 소 | | | |
| 성 명 | | 연락처 | |
| | | | |

상기와 같이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 .

제 출 인 :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 |
|---|
| <p>[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와 같이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 의 자 : (인)</p> |
|---|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91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매각 대상자의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장
2021년 6월 18일

주식 매각 공개목록

| 소 속 | 전라북도의회 | | 직위(직급) | 도의원 | 성 명 | 홍성임 |
|------------|---------------|-------|--------------|----------------------|--------------|----------------|
| 본인과의 관계 |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 | 매각또는 신탁여부 |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 매각또는 신탁일자 | 매각또는 신탁회사 |
| | 발행인 | 보유주식수 | | | | |
| 본인 | HMM | 330 | 매각 | 16,203 | 21.5.27 | NH투자증권 |
| 본인 | 삼영 에스엔씨 | 500 | 매각 | 13,775 | 21.5.26 | NH투자증권 |
| 본인 | 케이사인 | 1,000 | 매각 | 2,435 | 21.5.26 | NH투자증권 |
| 본인 | 카스 | 1,000 | 매각 | 4,205 | 21.5.27 | NH투자증권 |
| 배우자 | 아이티셀 | 5,038 | 매각 | 29,472 | 21.5.3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배우자 | 대교 | 1 | 매각 | 4 | 21.5.3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배우자 | 세하 | 2,340 | 매각 | 5,709 | 21.5.11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배우자 | 화승 코퍼레이션 | 1 | 매각 | 2 | 21.5.28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배우자 | 인산가 | 1 | 매각 | 2 | 21.5.3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배우자 | 원하이텍 | 820 | 매각 | 3,931 | 21.5.31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배우자 | 본느 | 530 | 매각 | 1,908 | 21.5.31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군산시 고시 제2021-82호

군산 미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미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6월 18일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1 | 군산 미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8-73번지 일원 | 864,284.9 | - | 864,284.9 | |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 류 별 | 합 계 | | | 1 류 | | | 2 류 | | | 3 류 | | |
|-----|--------------|--------------------|------------------------|------------|-------------------|------------------------|------------|--------------------|------------------------|------------|------------------|----------------------|
|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 합계 | 137 (127) | 32,375 (19,117) | 672,470 (276,967.0) | 18 (15) | 10,649 (5,105) | 289,038 (100,255.9) | 61 (56) | 17,897 (10,678) | 349,464 (145,135.7) | 58 (56) | 3,829 (3,314) | 33,968 (31,606.1) |
| 대로 | 5 (4) | 13,995 (3,289) | 451,860 (96,383.4) | 3 (3) | 6,402 (2,206) | 224,070 (60,433.2) | 2 (1) | 7,593 (1,083) | 227,790 (35,950.2) | - | - | - |
| 중로 | 37 (32) | 9,963 (8,349) | 154,138 (119,688.7) | 4 (3) | 2,140 (1,270) | 43,778 (22,869.8) | 24 (21) | 5,574 (4,998) | 83,983.3 (71,421.9) | 9 (8) | 2,238 (2,061) | 26,468 (25,452.3) |
| 소로 | 95 (90) | 8,417 (7,479) | 66,472 (60,894.9) | 11 (9) | 2,107 (1,649) | 21,190 (16,922.9) | 35 (34) | 4,719 (4,577) | 37,746 (37,818.2) | 49 (48) | 1,591 (1,253) | 7,500 (6,153.8) |

주) 1. 도로연장 및 면적 내용중 괄호안은 대상지내 연장임

나) 도로 결정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대로 | 1 | 1 | 35 | 주간선도로 | 5,500 (1,304) | 문화동 광2-3 | 윤희리 13호광장 | 일반 도로 | 6호공원 종합운동장 | 건고525 (‘67.7.25) | 가·감 속차로설 치 |
| 기정 | 대로 | 1 | 23 | 35 | 주간선도로 | 460 | 대로 1-1 | 대로 2-6 | 일반 도로 | | 군산고3 29 (‘11.10.2 8) | |
| 기정 | 대로 | 1 | 24 | 35 | 주간선도로 | 442 | 대로 2-6 | 대로 2-2 | 일반 도로 | | 군산고3 29 (‘11.10.2 8) | |
| 기정 | 대로 | 2 | 2 | 30 | 주간선도로 | 1,746 (0) | 경암동 대2-4 | 대로 1-21 | 일반 도로 | | 건고525 (‘67.7.25) | 지구외 |
| 기정 | 대로 | 2 | 6 | 30 | 보조간선도로 | 5,847 (1,083) | 수송동 광2-3 | 개정동 대로 1-1 | 일반 도로 | | 건고228 (‘86.5.23) | 가·감 속차로설 치 |

※ ()분은 지구내 연장임

| 구 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1 | 115 | 20 | 집산도로 | 644 | 대로 2-6 | 중로 1-2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1 | 20 | 20~ 22 | 보조간선도로 | 670 (428) | 수송동 대로 2-5 | 수송동 대로 2-6 | 일반 도로 | | 군산고210 (‘96.6.1) | |
| 기정 | 중로 | 1 | 21 | 20~ 22 | 보조간선도로 | 472 (0) | 대로 1-1 | 대로 2-6 | 일반 도로 | | | 지구외, 가·감 속차로설 치 |
| 기정 | 중로 | 1 | 60 | 20 | 집산도로 | 354 (198) | 대로1-21 | 중로 1-22 | 일반 도로 | | 군산고210 (‘96.6.1) | |
| 기정 | 중로 | 2 | 161 | 15 | 국지도로 | 308 | 대로 1-24 | 중로 1-115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62 | 15 | 국지도로 | 35 | 대로 1-24 | 중로 2-163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63 | 15 | 국지도로 | 859 | 중로 2-6 | 중로 2-6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64 | 15 | 국지도로 | 146 | 중로 2-163 | 중로 2-167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65 | 15 | 국지도로 | 102 | 중로 2-164 | 중로 2-167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66 | 15 | 국지도로 | 109 | 대로 2-6 | 중로 2-167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67 | 15 | 국지도로 | 222 | 중로 2-163 | 중로 2-163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 | | | | | | | | | | |
|----|----|---|-----|----|------|-----|----------|----------|-------|--|--------------------|
| 기정 | 중로 | 2 | 168 | 15 | 국지도로 | 35 | 대로 1-24 | 중로 2-163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중로 | 2 | 169 | 15 | 국지도로 | 60 | 중로 2-163 | 중로 2-164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중로 | 2 | 170 | 15 | 국지도로 | 240 | 대로 2-6 | 중로 2-179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중로 | 2 | 171 | 15 | 국지도로 | 237 | 대로 2-6 | 중로 2-180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중로 | 2 | 172 | 15 | 집산도로 | 244 | 대로 2-6 | 중로 2-180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중로 | 2 | 179 | 15 | 집산도로 | 572 | 대로 1-23 | 중로 1-21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중로 | 2 | 180 | 15 | 집산도로 | 572 | 대로 1-23 | 중로 1-21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중로 | 2 | 173 | 15 | 집산도로 | 205 | 대로 1-1 | 중로 2-179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중로 | 2 | 174 | 15 | 국지도로 | 167 | 중로 3-89 | 중로 2-179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중로 | 2 | 175 | 15 | 국지도로 | 168 | 중로 3-90 | 중로 2-180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중로 | 2 | 176 | 15 | 집산도로 | 208 | 대로 1-1 | 중로 2-180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중로 | 2 | 181 | 15 | 집산도로 | 193 | 대로 1-1 | 중로 2-180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중로 | 2 | 177 | 15 | 특수도로 | 27 | 대로 1-1 | 중로 3-89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중로 | 2 | 178 | 15 | 특수도로 | 27 | 대로 1-1 | 중로 3-90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분은 지구내 연장임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2 | 23 | 15 | 집산도로 | 179 (0) | 미장동 중로1-20 | 소로 2-2 | 일반도로 | | | 지구외 |
| 기정 | 중로 | 2 | 29 | 15 | 집산도로 | 143 (0) | 중로 1-1 | 미장동 중로1-22 | 일반도로 | | 군산고210 ('96.6.1) | 지구외 |
| 기정 | 중로 | 2 | 30 | 15 | 집산도로 | 245 (0) | 미장동 대로2-6 | 미장동 중로2-13 | 일반도로 | | 군산고210 ('96.6.1) | 지구외 |
| 기정 | 중로 | 3 | 85 | 12 | 국지도로 | 155 | 중로 2-170 | 중로 2-30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3 | 86 | 12 | 국지도로 | 271 | 중로 2-170 | 중로 2-170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3 | 87 | 12 | 국지도로 | 270 | 중로 2-171 | 중로 2-171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3 | 88 | 12 | 국지도로 | 159 | 중로 2-171 | 중로 2-172 | 일반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 | | | | | | | | | | | |
|----|----|---|------|-------|------|----------|-----------|-----------|------|--|-------------------|------|
| 기정 | 중로 | 3 | 89 | 12 | 국지도로 | 404 | 중로 2-174 | 중로 2-173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3 | 90 | 12 | 국지도로 | 414 | 중로 2-175 | 중로 2-176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3 | 91 | 12 | 집산도로 | 87 (54) | 중로 1-60 | 소로 2-500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3 | 92 | 12 | 집산도로 | 334 | 대로 2-6 | 중로 2-180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3 | 25 | 12 | 집산도로 | 144 (0) | 중로 2-19 | 중로 2-14 | 일반도로 | | | 지구외 |
| 기정 | 소로 | 1 | 460 | 10 | 국지도로 | 220 | 중로 1-115 | 중로 2-23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1 | 196 | 10 | 국지도로 | 186 | 중로 1-20 | 소로 1-194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1 | 461 | 10 | 국지도로 | 125 | 소로 1-194 | 중로 1-115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1 | 462 | 10 | 국지도로 | 125 | 중로 1-115 | 중로 2-161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1 | 463 | 10 | 국지도로 | 25 | 소로 1-462 | 대로 1-21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1 | 464 | 10 | 국지도로 | 132 | 중로 1-60 | 중로 2-161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1 | 465 | 10 | 국지도로 | 227 | 소로 1-466 | 소로 1-466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1 | 466 | 10 | 국지도로 | 208 | 중로 2-180 | 중로 2-180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1 | 188 | 10 | 국지도로 | 192 (0) | 소로 2-500 | 중로 1-1 | 일반도로 | | | 지구외 |
| 기정 | 소로 | 1 | 191 | 10 | 국지도로 | 55 (0) | 중로 2-1 | 소로 2-500 | 일반도로 | | 군산노210 (96.6.1) | 지구외 |
| 기정 | 소로 | 1 | 194 | 10~12 | 국지도로 | 231 (20) | 대로 2-6 | 중로 2-23 | 일반도로 | | 군산노210 (96.6.1) | 보도포함 |
| 기정 | 소로 | 2 | 1040 | 8 | 국지도로 | 252 | 소로1-460 | 소로 1-460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41 | 8 | 국지도로 | 124 | 중로2-23 | 중로 1-115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42 | 8 | 국지도로 | 143 | 소로 2-1044 | 소로 2-1044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43 | 8 | 국지도로 | 143 | 소로 2-1044 | 소로 2-1044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1044 | 8 | 국지도로 | 359 | 소로 1-194 | 소로 1-194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45 | 8 | 국지도로 | 188 | 소로 2-2047 | 소로 2-2048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46 | 8 | 국지도로 | 116 | 소로 2-1045 | 소로 2-1048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47 | 8 | 국지도로 | 228 | 중로1-115 | 소로1-462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48 | 8 | 국지도로 | 87 | 중로2-161 | 소로 2-1047 | 일반도로 | | 군산노329 (11.10.28) | |

| | | | | |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1049 | 8 | 국지도로 | 108 | 소로 2-1048 | 소로1-462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0 | 8 | 국지도로 | 93 | 소로 2-1048 | 소로 1-462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1 | 8 | 국지도로 | 88 | 중로 1-60 | 소로 2-50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2 | 8 | 국지도로 | 72 | 중로3-91 | 소로 2-1051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3 | 8 | 국지도로 | 172 | 중로3-85 | 소로 2-1056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4 | 8 | 국지도로 | 171 | 중로3-85 | 소로 2-1056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5 | 8 | 국지도로 | 171 | 중로 3-85 | 소로 2-1056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6 | 8 | 국지도로 | 155 | 중로 2-30 | 중로 2-17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7 | 8 | 국지도로 | 166 | 중로 3-88 | 소로 2-106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8 | 8 | 국지도로 | 166 | 중로3-88 | 소로 2-106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9 | 8 | 국지도로 | 167 | 중로 3-88 | 소로 2-106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0 | 8 | 국지도로 | 161 | 중로 2-171 | 중로 2-172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1 | 8 | 국지도로 | 133 | 소로 2-1064 | 중로 3-89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2 | 8 | 국지도로 | 134 | 소로 2-1064 | 중로 3-89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3 | 8 | 국지도로 | 134 | 소로 2-1064 | 중로 3-89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4 | 8 | 국지도로 | 154 | 중로 2-173 | 중로 2-174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5 | 8 | 국지도로 | 135 | 소로 2-1068 | 중로3-9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6 | 8 | 특수도로 | 26 | 소로 2-1068 | 어린이공원 95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7 | 8 | 국지도로 | 135 | 소로 2-1068 | 중로3-9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8 | 8 | 국지도로 | 162 | 중로2-175 | 중로2-176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9 | 8 | 국지도로 | 77 | 소로 2-1051 | 소로1-464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70 | 8 | 국지도로 | 39 | 소로 2-1069 | 소로 2-50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1071 | 8 | 특수도로 | 25 | 대로 1-21 | 중로2-163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72 | 8 | 특수도로 | 58 | 중로2-163 | 중로2-167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73 | 8 | 특수도로 | 35 | 중로 2-6 | 중로2-163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 | | | |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500 | 8 | 국지도로 | 142 (0) | 미장동 56-4답 | 미장동 54-3대 | 일반 도로 | | 군산고210 (966.1) | 지구외 |
| 기정 | 소로 | 3 | 246 | 6 | 국지도로 | 46 (0) | 조촌동765- 1 대1-3 | 조촌동765-2 소4-88 | 일반 도로 | | 전북고35 (785.22) | 지구외 (가각변경) |
| 기정 | 소로 | 3 | 4-88 | 4 | 국지도로 | 338 (0) | 조촌동 소3-246 | 조촌동 소2-254 | 일반 도로 | | 진고66호 (746.12) | 지구외 |
| 기정 | 소로 | 3 | 804 | 5 | 특수도로 | 11 | 중로1-115 | 소로 2-1040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05 | 5 | 특수도로 | 11 | 중로1-115 | 소로 2-1045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06 | 5 | 특수도로 | 13 | 소로 2-1041 | 소로 2-1040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07 | 5 | 특수도로 | 28 | 소로 1-194 | 소로 2-1042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08 | 5 | 특수도로 | 28 | 소로 2-1042 | 소로 2-1043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09 | 5 | 특수도로 | 28 | 소로 2-1043 | 소로 2-1044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0 | 5 | 특수도로 | 17 | 소로 2-1044 | 중로1-115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1 | 3 | 특수도로 | 19 | 대로 2-6 | 소로1-196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2 | 5 | 특수도로 | 10 | 소로1-461 | 소로 2-1044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3 | 5 | 특수도로 | 28 | 대로 2-6 | 소로1-462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4 | 5 | 특수도로 | 17 | 소로1-462 | 대로 1-21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5 | 5 | 특수도로 | 28 | 소로1-462 | 대로 1-21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6 | 5 | 특수도로 | 28 | 중로3-85 | 대로 2-6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7 | 5 | 특수도로 | 17 | 중로3-86 | 대로 1-20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8 | 5 | 특수도로 | 19 | 대로 1-20 | 중로3-87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9 | 5 | 특수도로 | 25 | 중로3-88 | 대로 2-6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0 | 5 | 특수도로 | 32 | 중로 2-30 | 소2-1053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1 | 5 | 특수도로 | 33 | 소로 2-1053 | 소로 2-1054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분은 지구내 연장임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경 과 지 | 최 초 결 정 일 | 비 고 |
|----|-----|-----|-----|-----------|------|-----------|--------------|--------------|-----------|---------|-----------------------|-----|
| | 등급 | 류 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822 | 5 | 특수도로 | 33 | 소로 2-1055 | 중로2-170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3 | 5 | 특수도로 | 40 | 중로2-170 | 중로3-86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4 | 5 | 특수도로 | 30 | 중로 3-86 | 대로 1-20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5 | 5 | 특수도로 | 30 | 대로 1-20 | 중로3-87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6 | 5 | 특수도로 | 40 | 중로3-87 | 중로2-171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7 | 5 | 특수도로 | 34 | 중로2-171 | 소로 2-1057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8 | 5 | 특수도로 | 34 | 소로 2-1057 | 소로 2-1058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0 | 5 | 특수도로 | 34 | 소로 2-1059 | 중로2-172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1 | 5 | 특수도로 | 25 | 중로2-179 | 소로 2-1056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2 | 5 | 특수도로 | 17 | 중로3-86 | 대로 1-20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3 | 5 | 특수도로 | 19 | 대로 1-20 | 중로3-87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4 | 5 | 특수도로 | 25 | 중로2-180 | 소로 2-1060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5 | 5 | 특수도로 | 25 | 소로 2-1064 | 중로2-179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6 | 5 | 특수도로 | 19 | 중로3-89 | 대로 1-20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7 | 5 | 특수도로 | 19 | 대로 1-20 | 중로3-90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8 | 5 | 특수도로 | 25 | 소로 2-1068 | 중로2-180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9 | 5 | 특수도로 | 33 | 중로2-173 | 소로 2-1061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40 | 5 | 특수도로 | 32 | 소로 2-1061 | 소로 2-1062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41 | 5 | 특수도로 | 32 | 소로 2-1062 | 소로 2-1063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42 | 5 | 특수도로 | 32 | 소로 2-1063 | 중로2-174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 | | |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843 | 5 | 특수도로 | 40 | 중로2-174 | 중로3-89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소로 | 3 | 844 | 5 | 특수도로 | 30 | 중로3-89 | 대로 1-20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소로 | 3 | 845 | 5 | 특수도로 | 30 | 대로 1-20 | 중3-90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소로 | 3 | 846 | 5 | 특수도로 | 40 | 중로3-90 | 중로2-175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기정 | 소로 | 3 | 847 | 5 | 특수도로 | 34 | 중로2-175 | 소로 2-1065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구분 | 구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상 황 | 주 경 과 처 | 최 절 정 출 | 비 고 |
|----|-----|-----|-----|---------|------|--------|---------|---------|-------|---------|--------------------|-----|
| | 등급 | 류 별 | 번호 | 폭 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849 | 2.5 | 특수도로 | 34 | 소2-1067 | 중로2-176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50 | 5 | 특수도로 | 19 | 중로3-89 | 대로 1-20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51 | 5 | 특수도로 | 19 | 대로 1-20 | 중로3-90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52 | 5 | 특수도로 | 12 | 근린공원44 | 소로1-465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53 | 5 | 특수도로 | 25 | 중2-180 | 소로1-466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9,398.6 (12,661.6) | - | 9,398.6 (12,661.6) | | |
| 기정 | 104 | 노외주차장 | 미장동 54-67답 일원 | 446.4 | - | 446.4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105 | 노외주차장 | 미장동 56-8답 일원 | 543.1 | - | 543.1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106 | 노외주차장 | 미장동 57-5답 일원 | 915.1 | - | 915.1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107 | 노외주차장 | 미장동 58-6답 일원 | 3,263 | - | 3,263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108 | 노외주차장 | 미장동 59-47답 일원 | 1,053.2 | - | 1,053.2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109 | 노외주차장 | 미장동 59-20답 일원 | 782.2 | - | 782.2 | 군산고329 ('11.10.28) | |

| | | | | | | | | |
|----|-----|-------|---------------|---------|---|---------|----------------------|--|
| 기정 | 110 | 노외주차장 | 미장동 60-16답 일원 | 783.2 | - | 783.2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111 | 노외주차장 | 미장동 60-25답 일원 | 776.1 | - | 776.1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112 | 노외주차장 | 미장동 61-21답 일원 | 780.1 | - | 780.1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113 | 노외주차장 | 미장동 61-2답 일원 | 459.6 | - | 459.6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114 | 노외주차장 | 조촌동 255답 일원 | 481.4 | - | 481.4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115 | 노외주차장 | 미장동 58-2답 일원 | 2,378.2 | - | 2,378.2 | 전북고72 (16.04.29) | |

※ ()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포함한 면적임

3) 철도

가) 철도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 1,342.4 | - | 1,342.4 | | |
| 기정 | 1 | 철도 | 일반철도 | 조촌동 723철 일원 | 1,342.4 | - | 1,342.4 | 군산고329 (11.10.28) | |

나. 도시공간시설(변경없음)

1) 광장

가) 광장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 1,506.9 | - | 1,506.9 | | |
| 변경 | 1 | 광장 | 경관광장 | 조촌동 765-4대 일원 | 1,506.9 | - | 1,506.9 | 군산고329 (11.10.28) | |

2) 공공공지

가) 공공공지 결정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1,938.2 | - | 1,938.2 | | |
| 기정 | 35 | 공공공지 | 미장동 56-23답 일원 | 85.6 | - | 85.6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36 | 공공공지 | 미장동 56-120답 일원 | 85.9 | - | 85.9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37 | 공공공지 | 미장동 62-17답 일원 | 882.9 | - | 882.9 | | |
| 기정 | 38 | 공공공지 | 미장동 62-15답 일원 | 883.8 | - | 883.8 | | |

3) 공원

가) 공원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 90,991.4 | - | 90,991.4 | | |
| 소계 | | | | - | 64,219.7 | - | 64,219.7 | | |
| 기정 | 41 | 공원 | 근린공원 | 미장동 484-2 | 10,235.5 | - | 10,235.5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42 | 공원 | 근린공원 | 미장동 500-1 | 19,603.3 | - | 19,603.3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43 | 공원 | 근린공원 | 미장동 542-2 | 10,340 | - | 10,340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44 | 공원 | 근린공원 | 조촌동 3942 | 24,040.9 | - | 24,040.9 | 군산고329 (11.10.28) | |
| 소계 | | | | - | 11,608.7 | - | 11,608.7 | | |
| 기정 | 93 |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장동 487 | 2,456.3 | - | 2,456.3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94 |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장동 538-5 | 1,557.6 | - | 1,557.6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95 |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장동 554-5 | 1,500.0 | - | 1,500.0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96 |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장동 506 | 1,588.6 | - | 1,588.6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97 |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장동 558-1 | 2,508.7 | - | 2,508.7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98 |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장동 529-4 | 1,997.5 | - | 1,997.5 | 군산고329 (11.10.28) | |

| 소계 | | | | - | 15,163.0 | - | 15,163.0 | | |
|----|----|----|-----|------------|----------|---|----------|----------------------|--|
| 기정 | 20 | 공원 | 소공원 | 미장동 495-12 | 537.4 | - | 537.4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21 | 공원 | 소공원 | 미장동 515-6 | 656.4 | - | 656.4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22 | 공원 | 소공원 | 미장동 516-5 | 1,162.9 | - | 1,162.9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23 | 공원 | 소공원 | 미장동 517 | 3,255.3 | - | 3,255.3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24 | 공원 | 소공원 | 미장동 513-2 | 929.2 | - | 929.2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25 | 공원 | 소공원 | 미장동 508 | 4,728.8 | - | 4,728.8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26 | 공원 | 소공원 | 조촌동 3936-3 | 1,314.2 | - | 1,314.2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27 | 공원 | 소공원 | 미장동 559 | 2,578.8 | - | 2,578.8 | 군산고329 (11.10.28) | |

4) 녹지

가) 녹지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 | 70,206.9 (4,739.9) | - | 70,206.9 (4,739.9) | | |
| 기정 | 1 | 녹지 | 완충녹지 | 미장동 59-39답 일원 | 2,145.4 (2,145.4) | - | 2,145.4 (2,145.4)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2 | 녹지 | 완충녹지 | 미장동 64-6대 일원 | 2,594.5 (2,145.4) | - | 2,594.5 (2,145.4)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3 | 녹지 | 완충녹지 | 조촌동 244-1전 일원 | 65,467 (0) | - | 65,467 (0) | (86,523) | 지구 외 |

※ ()는 지구내 면적임

다. 공공문화시설

1) 학교(변경없음)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 - | 21,138 | | |
| 기정 | 31 | 학교 | 초등학교 | 미장동 56-108답 일원 | 21,138 | 96.6.1 | 미장초 |

2) 공공청사(변경)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 | 13,047 | 감) 919.6 | 12,127.4 | | |
| 폐지 | 1 | 공공청사 | 주민센터 | 미장동 56-83답 일원 | 919.6 | 감) 919.6 |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2 | 공공청사 | 세무서 | 미장동 61-4답 일원 | 7,029.4 | - | 7,029.4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3 | 공공청사 | 농림축산 검역본부 | 미장동 62-16 일원 | 5,098 | - | 5,098 | | |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공공청사1 | 공공청사 | · 공공청사 폐지 - 면적 : 919.6 → 0㎡ (감 919.6㎡) | ·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결정으로 변경하여 폐지 |

3) 사회복지시설(신설)

가)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919.6 | 919.6 | | |
| 신설 | 4 | 사회복지시설 | 미장동 504 | - | 919.6 | 919.6 | 금회 | |

나) 사회복지시설 결정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4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신설 면적 : 919.6㎡ | · 군산시 생활 SOC복합화 사업 대상 선정에 따른 가족센터 건립 |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계 | - | - | | 9,406 | | |
| 기정 | 1 | 유수지 | 저류지 | 미장동 52-15중 일원 | 4,782 | 군산고329 (‘11.10.28) | 근린공원1과 중복결정 |
| 기정 | 2 | 유수지 | 저류지 | 미장동 59-36답 일원 | 4,624 | 군산고329 (‘11.10.28) | 근린공원3와 중복결정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 | |
| 계 | - | 131,912.8 | - | 131,912.8 | - | 131,912.8 | |
| R | 1 | 2,263.0 | - | 2,263.0 | | | 최소획지규모 (200㎡) 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
| | 2 | 3,648.7 | - | 3,648.7 | | | |
| | 3 | 1,883.5 | - | 1,883.5 | | | |
| | 4 | 1,083.9 | - | 1,083.9 | | | |
| | 5 | 1,114.4 | - | 1,114.4 | | | |
| | 6 | 2,129.9 | - | 2,129.9 | | | |
| | 7 | 3,211.0 | - | 3,211.0 | | | |
| | 8 | 3,206.7 | - | 3,206.7 | | | |
| | 9 | 1,727.2 | - | 1,727.2 | | | |
| | 10 | 2,165.1 | - | 2,165.1 | | | |
| | 11 | 2,381.8 | - | 2,381.8 | | | |
| | 12 | 3,115.1 | - | 3,115.1 | | | |
| | 13 | 3,136.9 | - | 3,136.9 | | | |
| | 14 | 2,398.9 | - | 2,398.9 | | | |
| | 15 | 1,931.8 | - | 1,931.8 | | | |
| | 16 | 1,930.2 | - | 1,930.2 | | | |
| | 17 | 1,921.3 | - | 1,921.3 | | | |
| | 18 | 1,273.9 | - | 1,273.9 | | | |
| | 19 | 1,911.2 | - | 1,911.2 | | | |
| | 20 | 1,916.6 | - | 1,916.6 | | | |
| | 21 | 1,917.8 | - | 1,917.8 | | | |
| | 22 | 1,518.1 | - | 1,518.1 | | | |
| | 23 | 1,614.6 | - | 1,614.6 | | | |
| | 24 | 2,676.9 | - | 2,676.9 | | | |
| | 25 | 2,668.8 | - | 2,668.8 | | | |
| | 26 | 2,668.6 | - | 2,668.6 | | | |
| | 27 | 2,669.2 | - | 2,669.2 | | | |
| | 28 | 2,738.0 | - | 2,738.0 | | | |
| | 29 | 2,734.7 | - | 2,734.7 | | | |
| | 30 | 1,315.0 | - | 1,315.0 | | | |
| | 31 | 2,683.9 | - | 2,683.9 | | | |
| | 32 | 1,829.1 | - | 1,829.1 | | | |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 | |
| R | 33 | 1,840.0 | - | 1,840.0 | | | 최소획지규모 (200㎡) 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결 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
| | 34 | 1,834.6 | - | 1,834.6 | | | |
| | 35 | 1,824.8 | - | 1,824.8 | | | |
| | 36 | 1,979.6 | - | 1,979.6 | | | |
| | 37 | 1,982.8 | - | 1,982.8 | | | |
| | 38 | 1,996.8 | - | 1,996.8 | | | |
| | 39 | 2,007.5 | - | 2,007.5 | | | |
| | 40 | 2,135.9 | - | 2,135.9 | | | |
| | 41 | 2,137.0 | - | 2,137.0 | | | |
| | 42 | 2,127.4 | - | 2,127.4 | | | |
| | 43 | 2,115.6 | - | 2,115.6 | | | |
| | 44 | 2,797.3 | - | 2,797.3 | | | |
| | 45 | 2,792.2 | - | 2,792.2 | | | |
| | 46 | 1,547.3 | - | 1,547.3 | | | |
| | 47 | 2,907.4 | - | 2,907.4 | | | |
| | 48 | 2,671.5 | - | 2,671.5 | | | |
| | 49 | 2,666.6 | - | 2,666.6 | | | |
| | 50 | 2,071.6 | - | 2,071.6 | | | |
| | 51 | 2,685.6 | - | 2,685.6 | | | |
| | 52 | 1,914.6 | - | 1,914.6 | | | |
| | 53 | 1,929.4 | - | 1,929.4 | | | |
| | 54 | 1,925.7 | - | 1,925.7 | | | |
| | 55 | 1,920.6 | - | 1,920.6 | | | |
| | 56 | 2,238.0 | - | 2,238.0 | | | |
| | 57 | 893.6 | - | 893.6 | | | |
| | 58 | 876.6 | - | 876.6 | | | |
| | 59 | 2,240.5 | - | 2,240.5 | | | |
| | 60 | 2260 | - | 2260 | | | |
| | 63 | 2,206.5 | - | 2,206.5 | | | |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나. 공동주택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m ²)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m ²) | |
| 계 | - | 146,297.7 | - | 146,297.7 | - | 146,297.7 | |
| A | 1 | 24,372.2 | - | 24,372.2 | | | 획지의 분할 불가 (단,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은 제외) |
| | 2 | 47,309.0 | - | 47,309.0 | | | |
| | 3 | 39,058.5 | - | 39,058.5 | | | |
| | 4 | 35,558.0 | - | 35,558.0 | | |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m ²)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m ²) | |
| 계 | - | 92,114.6 | - | 92,114.6 | - | 92,114.6 | |
| NC | 1 | 1,510.2 | - | 1,510.2 | | | 최소획지규모(330m ²) 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
| | 2 | 1,652.3 | - | 1,652.3 | | | |
| | 3 | 2,585.6 | - | 2,585.6 | | | |
| | 4 | 3,611.0 | - | 3,611.0 | | | |
| | 5 | 2,691.2 | - | 2,691.2 | | | |
| | 6 | 1,923.4 | - | 1,923.4 | | | |
| | 7 | 2,245.8 | - | 2,245.8 | | | |
| | 8 | 1,912.8 | - | 1,912.8 | | | |
| | 9 | 2,417.0 | - | 2,417.0 | | | |
| | 10 | 1,905.1 | - | 1,905.1 | | | |
| | 11 | 1,883.2 | - | 1,883.2 | | | |
| | 12 | 1,922.7 | - | 1,922.7 | | | |
| | 13 | 1,922.8 | - | 1,922.8 | | | |
| | 14 | 1,915.5 | - | 1,915.5 | | | |
| | 15 | 1,798.9 | - | 1,798.9 | | | |
| | 16 | 3,274.7 | - | 3,274.7 | | | |
| | 17 | 2,538.4 | - | 2,538.4 | | | |
| | 18 | 2,618.0 | - | 2,618.0 | | | |
| | 19 | 3,293.3 | - | 3,293.3 | | | |
| | 20 | 2,394.8 | - | 2,394.8 | | | |
| | 21 | 2,511.7 | - | 2,511.7 | | | |
| | 22 | 2,424.6 | - | 2,424.6 | | | |
| | 23 | 2,283.9 | - | 2,283.9 | | | |
| | 24 | 1,765.2 | - | 1,765.2 | | | |
| | 25 | 1,763.9 | - | 1,763.9 | | | |
| | 26 | 1,763.2 | - | 1,763.2 | | | |
| | 27 | 1,762.8 | - | 1,762.8 | | | |
| | 28 | 1,651.8 | - | 1,651.8 | | | |
| | 29 | 1,958.7 | - | 1,958.7 | | | |

| | | | | | | |
|----|---------|---|---------|--|--|-----|
| 30 | 2,005.0 | - | 2,005.0 | | | |
| 31 | 1,705.6 | - | 1,705.6 | | | |
| 32 | 2,610.7 | - | 2,610.7 | | | |
| 33 | 2,095.6 | - | 2,095.6 | | | |
| 34 | 2,030.4 | - | 2,030.4 | | | |
| 35 | 2,584.4 | - | 2,584.4 | | | |
| 36 | 4,092.9 | - | 4,092.9 | | | |
| 37 | 1,250.0 | - | 1,250.0 | | | |
| 38 | 1,829.1 | - | 1,829.1 | | | |
| 39 | 2,219.0 | - | 2,219.0 | | | |
| 40 | 836.0 | - | 836.0 | | | |
| 41 | 1,659.8 | - | 1,659.8 | | | |
| 42 | 2,293.6 | - | 2,293.6 | | | |
| 43 | 1,000.0 | - | 1,000.0 | | | 과출소 |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라. 준주거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m ²)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m ²) | |
| 계 | - | 11,781.8 | - | 11,781.8 | - | 11,781.8 | |
| CE | 1 | 4,059.8 | - | 4,059.8 | | | 최소획지규모 (400m ²)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결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
| | 2 | 2,078.5 | - | 2,078.5 | | | |
| | 3 | 2,078.8 | - | 2,078.8 | | | |
| | 4 | 479.0 | - | 479.0 | | | |
| | 5 | 3,085.7 | - | 3,085.7 | | | |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마. 상업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m ²)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m ²) | |
| 계 | - | 54,200.4 | - | 54,200.4 | - | 54,200.4 | |
| C1 | 1 | 4,355.6 | - | 4,355.6 | | | 최소획지규모 (간선부상업용지:500m ² , 이면부상업용지:400m ²) 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결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
| | 2 | 4,382.1 | - | 4,382.1 | | | |
| | 3 | 2,203.5 | - | 2,203.5 | | | |

| | | | | | | |
|----|---|---------|---|---------|--|--|
| | 4 | 3,759.4 | - | 3,759.4 | | |
| | 5 | 3,750.9 | - | 3,750.9 | | |
| | 6 | 4,826.4 | - | 4,826.4 | | |
| C2 | 1 | 5,058.8 | - | 5,058.8 | | |
| | 2 | 3,648.6 | - | 3,648.6 | | |
| | 3 | 5,665.7 | - | 5,665.7 | | |
| C3 | 1 | 2,465.5 | - | 2,465.5 | | |
| | 2 | 2,046.5 | - | 2,046.5 | | |
| | 3 | 2,042.2 | - | 2,042.2 | | |
| | 4 | 3,204.3 | - | 3,204.3 | | |
| | 5 | 2,073.4 | - | 2,073.4 | | |
| | 6 | 4,717.5 | - | 4,717.5 | | |

※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바. 주차장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 | |
| 계 | - | 9,398.6 (12,661.6) | - | 9,398.6 (12,661.6) | - | 9,398.6 (12,661.6) | |
| 주 | 1 | 446.4 | - | 446.4 | | | 획지의 분할 불가 |
| | 2 | 543.1 | - | 543.1 | | | |
| | 3 | 915.1 | - | 915.1 | | | |
| | 4 | (3,263) | - | (3,263) | | | |
| | 5 | 1,053.2 | - | 1,053.2 | | | |
| | 6 | 782.2 | - | 782.2 | | | |
| | 7 | 783.2 | - | 783.2 | | | |
| | 8 | 776.1 | - | 776.1 | | | |
| | 9 | 780.1 | - | 780.1 | | | |
| | 10 | 459.6 | - | 459.6 | | | |
| | 11 | 481.4 | - | 481.4 | | | |
| | 12 | 2,378.2 | - | 2,378.2 | | | |

※ ()는 소공원4와 중복결정한 지하주차장 '주4'의 포함면적임

사. 교육시설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적(㎡) | |
| 계 | - | 21,138 | - | 21,138 | |
| 초 | 1 | 21,138 | 미장동 56-108답 일원 | 21,138 | 획지의 분할 불가 |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 | |
| 계 | - | 760.2 | - | 760.2 | - | 760.2 | |
| 주유 | 1 | 760.2 | - | 760.2 | | 760.2 | 획지의 분할 불가 |

자. 종교시설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 | |
| 계 | - | 6,092.7 | - | 6,092.7 | | 6,092.7 | |
| 종 | 1 | 2969.3 | - | 2969.3 | | | 획지의 분할 불가 |
| | 2 | 1320.7 | - | 1320.7 | | | |
| | 3 | 1802.7 | - | 1802.7 | | | |

차. 공급처리시설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적(㎡) | |
| 계 | - | 9,406 | - | 9,406 | |
| 저 | 1 | 4,782 | 미장동 52-15종 일원 | 4,782 | 획지의 분할 불가 |
| | 2 | 4,624 | 미장동 59-36답 일원 | 4,624 | |

3.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R | 1 ~ 63 | 용도 | 허용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간 제외) • 점포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 점포주택은 15m 이상의 도로에 장변이 면한 블록에 한하여 허용한다. (<그림1> 단독 주택용지 용도별 구분도 참조) ※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50% 이하여야 한다. |
| | | | 불허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별표1> 참조)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 높이 | • 최고층수 : 3층 이하(1층 전체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4층까지 허용) | |
| | | 허용 가구수 | • 3가구 이하 | |
| | | 건축선 |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
| |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전면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배치 시 경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일자형 배치는 지양토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남향, 동향, 동남향 배치를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축물을 설치토록 한다. - 건축물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 방향과 일치토록 권장하며, 가각에 접한 대지는 접한 모든 도로의 벽면방향과 일치토록 한다. -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변 1m를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다. • 건물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차이가 심한 개구부의 설치, 서로 조화되지 않는 형태의 개구부 배열, 난잡한 형태 요소의 남용, 기능과 무관한 장식용 창 설치 원칙적으로 금한다. - 점포주택 1층에는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cm 이내로 한다. - 점포주택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1/2 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 1층에 필로티구조로 주차장 활용시에는 수직이동공간 및 관리공간을 제외한 1층 전체를 필로티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부속설비(FRP 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 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 |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 R | 1 ~ 63 | 형태 및 외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할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문의 높이는 1.8m 이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 점포주택은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 그림 1 > 단독주택용지 용도별 구분도



나. 공동주택용지(아파트)(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기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A | 1 ~ 4 | 용도 | 허용 용도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 | 불허 용도 | • 허용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
| | | 용적률 |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
| | | 높이 |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
| | | 규모 및 세대수 |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모퉁이변 건축한계선 공간은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
| |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저감대책에서 제시하는 직각배치구간 및 층고제한 사항을 준수한다. • 저층(12층 이하) 배치구간,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 그리고 지정된 층수는 결정도를 따른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 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한하며 두 용도를 복합 설치 시 유치원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 주거동 1동의 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층 이하 부분 : 80m 이하 - 16층 ~ 20층 부분 : 60m 이하 - 21층 이상 부분 : 40m 이하 • 동일주거동내 층수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층 이하의 주거동 중 같은 층수의 연속된 길이가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동일주거동내에서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는 낮은 층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며, 10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층수변화로 인하여 외부로 노출되는 벽면은 입면디자인을 통하여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 | |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획 내용 | | | | | | | | | | | | | | | | |
|---|------------|---------|---|-------------|--------------------|--------------|------|--------|-------------|--------------------|--------------|--------|-----|--------------------|--------------|-------|------------|--------------|--------------|
| A | 1 ~ 4 | 형태 및 외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면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동은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주거동 입면변화의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0%;">최상층부</th> <th style="width: 20%;">기준층부</th> <th style="width: 20%;">지상층부</th> </tr> </thead> <tbody> <tr> <td>16층 이상</td> <td>최상층에서부터 2개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r> <td>15층-9층</td> <td>최상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r> <td>8층 이하</td> <td>최상층부 구분 없음</td> <td>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td> </tr> </tbody> </table> | 구 분 | 최상층부 | 기준층부 | 지상층부 | 16층 이상 |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 15층-9층 | 최상층 |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 8층 이하 | 최상층부 구분 없음 |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 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 |
| | | | 구 분 | 최상층부 | 기준층부 | 지상층부 | | | | | | | | | | | | | |
| | | | 16층 이상 |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 | | | | | | | | | | | | |
| | | | 15층-9층 | 최상층 |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 | | | | | | | | | | | | |
| | | | 8층 이하 | 최상층부 구분 없음 |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 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보행로에 주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피로티 구조'를 설치한다. 피로티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5.5m 또는 2개 층' 이상이며, '폭 10m 또는 주거동 1호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4호 이내의 주거동에 피로티 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최소 4m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있게 배치하고,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지붕형태를 박공, 방형(우진각), 원형 등으로 다양화 하고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건물의 상징성을 강조하여,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슬라브형 평지붕 설치시 지붕 전체 면적의 5/10 이내에 한하여 허용한다.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담장의 재료와 형태를 통일시키도록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 | | | | | | | | | | | | | | |

다.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 |
|----------------|--|------------------|--|--|
| | | | 계 획 내 용 | |
| NC | 1 ~ 42 | 용도 | 허용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장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것(통신용철탑 설치 불허) 주거용도 1개층에 한해 허용 |
| | | | 불허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별표1> 참조) |
| | | 건폐율 | • 50% 이하 |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 높이 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층수 : 5층 이하 최저층수 : 2층 이상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지정에 의해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고객을 위한 서비스 시설(조경, 파고라, 휴게의자, 지하설비구조물 등)을 제외한 보행자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배치를 불허한다. | |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전면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한다. 다만,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의 전면은 접한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 건축물 1층 바닥높이 및 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cm 이상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 준주거용지의 도로변 건축물 1층 층고는 4~4.5m 내외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 | | |

주1)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건축높이지정구간』에 해당하는 필지는 최저 및 최고층수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높이(16m~19m) 범위 내에서 건축하여야만 한다.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근 련 생 활 시 설 용 지 | |
|----------|-------------------------|-----|--|---------------------|
| | | | 계 획 내 용 | |
| NC | 1 ~ 42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1/2 이상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반사성 금속 반사성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금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 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입면 디자인시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
| 43 | | 용도 | 허용용도 | • 경찰 피출소·지구대 및 부속용도 |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 | 높이 | • 최고층수 : 5층 이하 | |
| 건축선 |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 | |

라.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 | 준주거용지 | |
| CE | 1 ~ 5 | 용도 | 허용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71조 제1항제6호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불허용도 외의 용도 |
| | | | 불허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해 허용) • 종교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해 허용)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에 한해 허용) • 발전시설 • 관광휴게시설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별표1> 참조)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 용적률 | • 400% 이하 | |
| | | 높이 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층수 : 7층 이하 • 최저층수 : 2층 이상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선 지정에 의해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고객을 위한 서비스시설(조경, 파고라, 휴게의자, 지하설비구조물 등)을 제외한 보행자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배치를 불허한다.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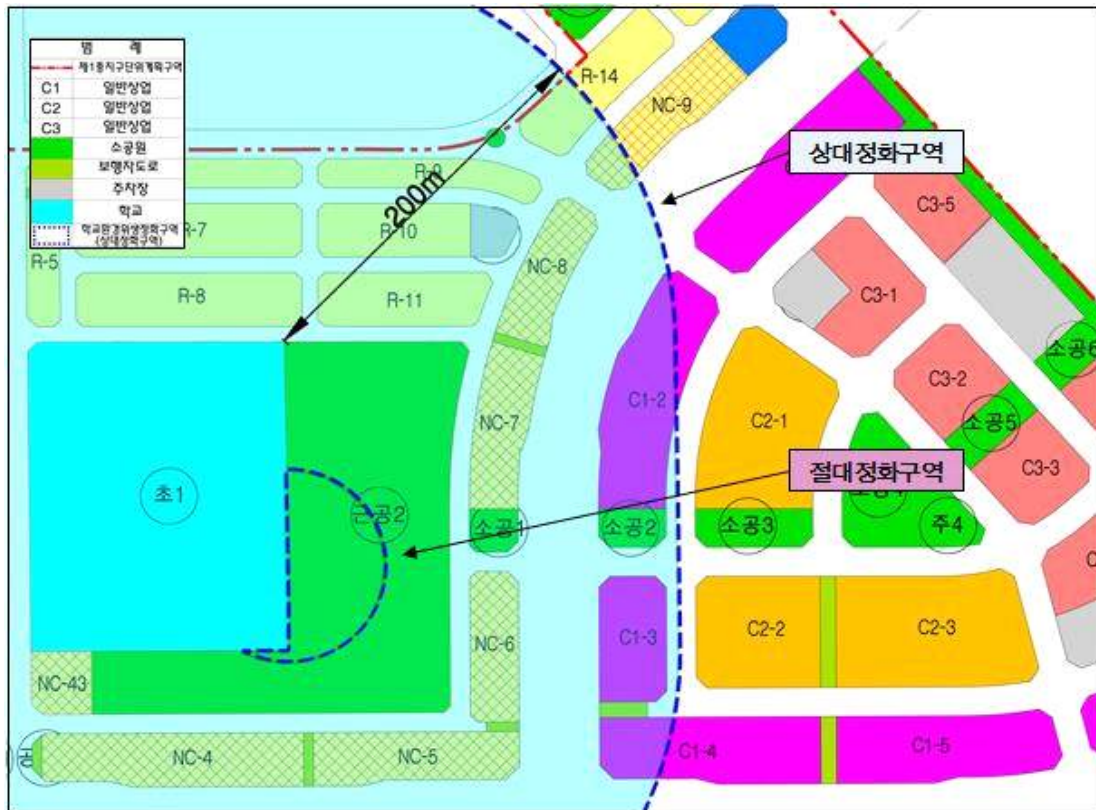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CE | 1 ~ 5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면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의 전면은 접한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 • 건축물 1층 바닥높이 및 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cm 이상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 준주거용지의 도로변 건축물 1층 층고는 4~4.5m 내외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1/2 이상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반사성 금속, 반사성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금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 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입면 디자인시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마. 상업용지(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용도 | • <별표3> 및 <그림2>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
| | | 건폐율 | • 70% 이하 |
| | | 용적률 | • 600% 이하 |
| | | 높이 | • 최저층수 : 2층 이상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선 지정에 의해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고객을 위한 서비스시설(조경, 파고라, 휴게의자, 지하설비구조물 등)을 제외한 보행자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배치를 불허한다. |
| C1 | 1 ~ 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면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의 전면은 접한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 • 건축물 1층 바닥높이 및 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cm 이상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 대로급 이상의 도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4.5m 내외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
| C2 | 1 ~ 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3/5 이상 투시형으로 하며, 서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반사성 금속, 반사성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금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상업용지 건축물에서 공원 및 보행자도로에 노출되는 외벽은 외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 또는 벽면녹화로 조성하여, 공원 및 보행자도로에서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정시설을 조성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일체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
| C3 | 1 ~ 6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3/5 이상 투시형으로 하며, 서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반사성 금속, 반사성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금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상업용지 건축물에서 공원 및 보행자도로에 노출되는 외벽은 외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 또는 벽면녹화로 조성하여, 공원 및 보행자도로에서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정시설을 조성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일체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C1 | 1 ~ 6,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 당해 건물로부터 인접대지까지의 측면이격거리가 2m 이하인 경우 측면이격공지의 전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시설이나 1층 높이 이상의 담장 또는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장이나 지하층 출입구는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색깔과 재료를 사용하여 한다. 측면이격거리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측면이격공지 전면부분에 식재 등 조경시설을 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입면 디자인시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 C2 | 1 ~ 3, | | |
| C3 | 1 ~ 6 | | |

< 그림 2 > 상업용지 용도별 구분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구분 포함)



바.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1)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 12 | | 용도 | 허용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부속용도'는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한정하며, 타시설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허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폐율, 용적률, 높이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3">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th> </tr> <tr> <th>도면표시</th> <th>P1</th> <th>P2</th> <th>P3</th> </tr> </thead> <tbody> <tr> <td>건폐율</td> <td>-</td> <td>80% 이하</td> <td>80% 이하</td> </tr> <tr> <td>용적률</td> <td>-</td> <td>640% 이하</td> <td>400% 이하</td> </tr> <tr> <td>최고층수</td> <td>-</td> <td>8층 이하</td> <td>5층 이하</td> </tr> <tr> <td>해당블록</td> <td>주1, 주2, 주4</td> <td>주3, 주5, 주12</td> <td>주6 ~ 주11</td> </tr> </tbody> </table> | | | 구분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 | | 도면표시 | P1 | P2 | P3 | 건폐율 | - | 80% 이하 | 80% 이하 | 용적률 | - | 640% 이하 | 400% 이하 | 최고층수 | - | 8층 이하 | 5층 이하 | 해당블록 | 주1, 주2, 주4 | 주3, 주5, 주12 | 주6 ~ 주11 |
| | | | 구분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면표시 | P1 | P2 | P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폐율 | - | 80% 이하 | 8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적률 | - | | 640% 이하 | 40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고층수 | - | 8층 이하 | 5층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블록 | 주1, 주2, 주4 | 주3, 주5, 주12 | 주6 ~ 주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 - 주차장건축물 전면부의 상층부는 주차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하도록 하며, 기타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은 상업업무용지의 사항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입면 디자인시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공공청사 (변경)

| 도면 표시 번호 | 원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공 | 2 | 용도 | 허용도 | • 세무서 및 부속용도 |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 | 높이 | - | |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옥상녹화를 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 V 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 | 3 | 용도 | 허용도 | •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부속용도 |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 높이 | - | |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옥상녹화를 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 V 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3) 교육시설(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초 | 1 | 용도 | 허용 용도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의한 초등학교 |
| |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 높이 | - | |
| | | 건축선 및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향배치를 권장하며,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 근린공원변 시설은 외부공간이 공원과 일체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건축물을 배치하여야한다.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한사항(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획내용 | |
|----------|-----------|-----|---|---------------|
| 주유 | 1 | 용도 | 허용 용도 | • 주유소 및 부대시설 |
| |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50% 이하 |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 이하 | |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 및 부대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

5) 종교시설(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 계 획 내 용 |
|----------------|---------------|-----|---|--|
| | | 용도 | 구분 | |
| 종 | 1 ~ 3 | 용도 | 허용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납골당 제외) |
| | | | 불허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
| | | 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 |
| | | 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종탑포함시 25m 이하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시설은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 및 층수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면에서 5층 이하로 조성한다. 건축물의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존치 건축물인 종교시설 3(그리심교회)은 제4호 근린공원 이용자의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담장을 설치하되,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등으로 설치토록 한다. 지붕 및 종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지붕 안에 설치하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돌출되는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한다. 종탑의 높이는 지면에서 25m 이하로 조성한다. 종탑에 부착되는 간판 및 종교상징물은 네온, 백열등 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한다. | |

6)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
| 저 | 1 ~ 2 | 용도 | 허용용도 | • 저류시설 |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20% 이하 | |
| | | 용적률 | • 80% 이하 | |
| | | 높이 | -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7) 사회복지시설(신설)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
| 사 | 1 | 용도 | 허용용도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준용) |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 | 높이 | - | |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옥상녹화를 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7.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R | 1 ~ 63 | 대지내 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대지내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마당은 가급적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점포형주택은 건축물 측면에 설치하고 단독주택은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 | 교통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가구당 1.42대 이상과 '군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한다. - 점포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거용도의 주차대수 설치기준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군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나. 공동주택용지(아파트)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 내용 |
|----------|-------|--------|--|
| A | 1 ~ 4 | 대지내 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2m 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주택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보행섬터를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한다. •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하고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12조의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르며, 공원 또는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한다. - 가각부의 공공조경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과 ‘군산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차량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한다. • 단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지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보한다. - 단지내 녹지는 인근 공동주택을 비롯해, 주변 공원 및 녹지가 상호 연계되도록 한다.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녹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허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시재를 한다. 2. 공원 및 완충녹지 주변 녹지 : 공원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검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3.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4.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 단지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수종 및 수고, 수폭, 근원직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심의시 검토 받아 계획적 식재를 한다. •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가로물매는 최소 1.5%, 최고 5%로 하며, 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될 수 있는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랩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되, 공공보행통로의 방향성 및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A | 1 ~ 4 | 교통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 주택단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자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T’자 교차를 허용하며 서로의 가감속차로가 겹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다. • 단지내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은 가급적 비상용,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상주차장 설치시 바닥포장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단지내 도로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권장한다.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다. 근린생활시설 · 준주거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분 | 계획 내용 |
|----------|--------------|--------|---|
| NC | 1 ~ 43 | 대지내 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하고 '제1편 제1장 제12조 제2항 (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 | | 교통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군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 주차장에는 입구기업·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실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가로변 불법 주차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
| CE | 1 ~ 5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항 -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라. 상 업 용 지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C1 C2 C3 | 1 ~ 6, 1 ~ 3, 1 ~ 6 | 대지내 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일반상업용지 중 공원면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공원 및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공연, 전시, 노천카페 등 다양한 예술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하고 '제1편 제1장 제12조 제②항 (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 | | 교통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군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연접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과 일체형 또는 연결통로를 조성하여 지하주차장을 공동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 주차장에는 입구기업·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며,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조경을 하며 이 경우 조성면적을 조정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마.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 | 공통 | 대지내 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경계부는 주변지역과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보행편의를 형성하도록 권장한다.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중 대형 공공시설은 야간활동 지원 및 주요 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 근린공원변 시설의 외부공간은 공원과 동일한 식재를 하는 등 공원과 일체화된 공간으로 조성한다. |
| | | 교통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군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한다. 단,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 내지 3%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한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 선에는 위 향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에는 대지면적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존치 건축물인 종교시설(그리스교회)은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주차대수 8대 및 환지도지를 감안한 주차대수 20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28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 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 초 | 1 | 교통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2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한다. • 보행자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한다. -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근린공원과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 | 대지내 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근린공원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공원과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
| 주유 | 1 | 교통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는 이용차량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설치한다. |

<별표1>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약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2008.3.21>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 (1)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2) 만화가게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
 -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 (5) 담배자동판매기
 -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별표2>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용적률·세대수·높이

| 구분 | | | 대지면적 (㎡) | 세대수 (세대) | 인구수 (인) | 평균 분양면적 (㎡) | 평균층수 (층) | 최고층수 (층) | 건폐율 (%) | 용적률 (%) | 비고 |
|-----|-----|--------|-------------|-------------|------------|-------------------|-------------|-------------|------------|------------|------|
| 유형 | 블록명 | 주택규모 | | | | | | | | | |
| 합계 | | | 146,378 | 3,470 | 9,821 | - | - | - | - | - | - |
| 아파트 | A-1 | 소계 | 24,373 | 694 | 1,964 | - | 20 | 25 | 50 | 250 | - |
| | | 85㎡ 이하 | 16,373 | 512 | 1,449 | 80 | 20 | 25 | 50 | 250 | 임대주택 |
| | | - | 8,000 | 182 | 515 | 110 | 20 | 25 | 50 | 250 | 분양주택 |
| | A-2 | - | 47,309 | 1,078 | 3,051 | 110 | 20 | 25 | 50 | 250 | 분양주택 |
| | A-3 | - | 39,138 | 890 | 2,519 | 110 | 20 | 25 | 50 | 250 | 임대주택 |
| | A-4 | - | 35,558 | 808 | 2,287 | 110 | 20 | 25 | 50 | 250 | 분양주택 |

※ 1) 평균분양면적 및 A-1블록의 임대, 분양간 대지면적은 세대수 등 계획지표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사항임.

<별표3> 일반상업용지 용도분류표

| 구 분 | 간선부 | 이면부 | | |
|-------------|--------------|--------------------------------------|--------------------------------------|---|
| | | C2 | C3 | |
| | | C1-1 ~ C1-6 | C2-1 ~ C2-3 | C3-1 ~ C3-6 |
| 영업 및 판매 시설군 | 위락시설 | X | X | ○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 한함 |
| | 판매시설 | ● 당해용도상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 제외 | ● 당해용도상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 제외 | ● 당해용도상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 제외 |
| | 숙박시설 | X | X | X |
| 문화 및 집회 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 ○ | ○ |
| | 종교시설 | X | X | X |
| | 운동시설 | ◇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 산업 시설군 | 관광휴게시설 | X | X | X |
| | 운수시설 | X | X | X |
| | 공장 | X | X | X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X | X | X |
| | 자동차관련시설 | ◇ 주차장에 한함 | ◇ 주차장에 한함 | ◇ 주차장에 한함 |
| | 분묘 및 쓰레기처리시설 | X | X | X |
| | 창고시설 | X | X | X |
| 교육 및 의료 시설군 | 교육연구시설 | ◇ 직업훈련소 및 학원에 한함 | ◆ 직업훈련소 및 학원에 한함 | ◇ 직업훈련소 및 학원에 한함 |
| | 노유자시설 | X | X | X |
| | 수련시설 | X | X | X |
| | 의료시설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
| 주거 및 업무 시설군 | 단독주택 | X | X | X |
| | 공동주택 | X | X | X |
| | 업무시설 | ● | ● | ● |
| | 방송통신시설 |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
| 기타 시설군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 | ○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 |
|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X | X | X |
| | 교정 및 군사시설 | X | X | X |
| | 발전시설 | X | X | X |
| | 묘지관련시설 | X | X | X |
| | 장례식장 | X | X | X |

주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권장), ◇: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권장), X: 불허용도
 주2) 상업용지의 경우 주상복합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은 불허용도임.
 주3) 학교외생경화구역내에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학교외생경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별표1> 및 <그림1>참조)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지도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고 제2021-1583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익 산 시 장
2021년 6월 18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모현동1가 제일 오투그란테 2차 아파트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의 규모

| 사업의 종류 | 시 설 명 | 사업면적 또는 규모 | 사업 시행지 | 비 고 |
|------------------|----------|--------------------------|-----------------------|-----|
|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 대로3류9호 | ◦ L= 90.0m, A= 253.2㎡ | 익산시 모현동1가 616번지 일원 | |
| | 중로3류514호 | ◦ L= 63.0m, A= 887.3㎡ | | |
| | 소로1류808호 | ◦ L= 8.0m, A= 130.3㎡ | | |
| | 소로2류820호 | ◦ L= 176.0m, A= 1,583.3㎡ | | |
| | 소로3류832호 | ◦ L= 149.0m, A= 933.4㎡ | | |
| 계 | | ◦ A=3,787.5㎡ | |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제일건설 대표 윤여용

나.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 (중앙동 2가)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5.

5. 관련도서 : 실음생략. 끝.

김제시 공고 제2021-529호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금구면 면도1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시 장

2021년 6월 18일

1. 노선지정 현황

| 읍·면 | 도로의 종류 | 노선명 | 노선 번호 | 도로구간 | | 총연장 | 주 용 경과지 | 개발계획 | | 지정사유 |
|-----|--------|-----|-------|----------------------|---------------------|--------|----------------------|-----------|-----------|-------------|
| | | | | 기점 | 종점 | | | 도로 너비 (m) | 포장 너비 (m) | |
| 금구면 | 면도 | 어전선 | 109 | 금구면 금구리 204-13 | 금구면 월전리 190-3 | 1.63km | 금구면 월전리 산119-9 | 8.0 | 6.0 | 농어촌 도로개설 |

2. 사 업 명 : 금구면 면도1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3. 사업기간 : 2021. 01. ~ 2023. 12.

4.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63km , B=8.0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김제시장

나.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6.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김제시청 안전개발국 건설과 (063-540-3387)

7.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제출방법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김제시청 안전개발국 건설과로 제출

※ 토지세목조서 중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의 편입면적은 도면에서 구적된 면적으로 추후 분할측량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건설과(063-540-33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1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산26 | 도 | 500 | 8 | 국 | 건설교통부 | | | | |
| 2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4-18 | 전 | 13 | 13 | 김영중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86-6 | | | | 압류 |
| 3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4-22 | 전 | 26 | 26 | 최백현 외1인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연동길 96-30 | | | | |
| 4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4-4 | 전 | 195 | 61 | 최백현 외1인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연동길 96-30 | | | | |
| 5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4-21 | 전 | 58 | 58 | 최백현 외1인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연동길 96-30 | | | | |
| 6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4-16 | 전 | 20 | 20 | 김영중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86-6 | | | | 압류 |
| 7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산10-4 | 도 | 198 | 198 | 공 | 김제시 | | | | |
| 8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산10-7 | 임 | 162 | 162 | 김영중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86-6 | | | | 압류 |
| 9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4-23 | 전 | 49 | 49 | 최백현 외1인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연동길 96-30 | | | | |
| 10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4-10 | 도 | 245 | 245 | 공 | 김제시 | | | | |
| 11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4-14 | 도 | 93 | 93 | 등기없음 | | | | | |
| 12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4-24 | 전 | 35 | 35 | 최백현 외1인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연동길 96-30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13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산10-8 | 임 | 39 | 39 | 탐진최 씨만천 공과중 중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527 | | | | |
| 14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04-11 | 임 | 168 | 168 | 탐진최 씨만천 공과중 중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527 | | | | |
| 15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597-2 | 도 | 30 | 30 | 공 | 김제시 | | | | |
| 16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597-4 | 전 | 12 | 12 | 최백현 외1인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460-5 | | | | |
| 17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04-10 | 임 | 15 | 15 | 탐진최 씨만천 공과중 중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527 | | | | |
| 18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04-5 | 도 | 298 | 298 | 공 | 김제시 | | | | |
| 19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597-3 | 전 | 18 | 18 | 최길성 외4인 | 김제군 금구면 월전리 473 | | | | |
| 20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03-14 | 도 | 496 | 496 | 이봉섭 외5인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583 | | | | |
| 21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417-17 | 전 | 9 | 9 | 김정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매봉16길 37, 가동 302호 (금암동,거성타워 아파트) | | | | |
| 22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413-5 | 대 | 79 | 79 | 박연자 외1인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412 | | | | |
| 23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622 | 도 | 417 | 208 | 국 | 건설교통부 | | | | |
| 24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415-17 | 도 | 83 | 83 | 등기 없음 |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25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413-3 | 대 | 198 | 9 | 김한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건훤로 100, 102동 710호(중노송동, 기린봉아파트) | | | | |
| 26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11-5 | 임 | 193 | 193 | 김경숙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217, 101동 1404호 (효자동1가,효자 뷰티빌아파트) | | | | |
| 27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13-8 | 임 | 7 | 7 | 임성희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1로 71, 801동 601호 (전북혁신엘에이 치아파트) | | | | |
| 28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97-6 | 전 | 5 | 5 | 임성희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1로 71, 801동 601호 (전북혁신엘에이 치아파트) | | | | |
| 29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97-3 | 도 | 20 | 20 | 등기없음 | | | | | |
| 30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13-5 | 임 | 99 | 11 | 온성우 외4인 |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1가 296-2 4차현대아파트 401동 502호 | | | | |
| 31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97-4 | 도 | 23 | 23 | 등기 없음 | | | | | |
| 32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13-3 | 도 | 397 | 397 | 등기 없음 | | | | | |
| 33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14-3 | 도 | 298 | 182 | 온영두 | 김제군 금구면 월전리 411 | | | | |
| 34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15-2 | 도 | 99 | 99 | 온영두 | 김제군 금구면 월전리 411 | | | | |
| 35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595-2 | 도 | 66 | 13 | 공 | 김제시 | | | | |
| 36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596-6 | 도 | 93 | 79 | 공 | 김제시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37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19-2 | 임 | 21,917 | 176 | 온재오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167(요촌동) | | | | |
| 38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679-36 | 도 | 7,706 | 34 | 국 | 건설부 | | | | |
| 39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4-20 | 답 | 89 | 89 | 경운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64-1 삼천주공6단지아 파트 601-104 | 김제산림 조합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286 (신평동) | 근저당, 지상권 | |
| 40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4-13 | 도 | 53 | 53 | 경운재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여전길 36-6 | | | | |
| 41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4-17 | 전 | 112 | 112 | 김영중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86-6 | | | | 압류 |
| 42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4-19 | 답 | 387 | 387 | 경라근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136-3, 103동 302호 (중인동,숯안애) | 김제산림 조합 |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286 (신평동) | 근저당, 지상권 | |
| 43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5-10 | 장 | 19 | 19 | 임종목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86 | 전북대학 교 새마을금 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근저당, 지상권 | |
| | | | | | | | | 농협은행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 근저당 | |
| | | | | | | | | 이우현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9-5 | 근저당 | |
| 44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4-25 | 전 | 186 | 186 | 농업회 사법인인 코엔에 프유한 회사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봉두로 148-22 | 한국산업 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 근저당 | |
| | | | | | | | | 농협은행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 근저당 | |
| 45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3-4 | 장 | 100 | 100 | 농업회 사법인인 코엔에 프유한 회사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봉두로 148-22 | 한국산업 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 근저당 | |
| | | | | | | | | 농협은행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 근저당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46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204-11 | 전 | 169 | 71 | 최백현 외1인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460-5 | | | | |
| 47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 산10-5 | 도 | 99 | 99 | 공 | 김제시 | | | | |
| 48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04-7 | 도 | 99 | 99 | 공 | 김제시 | | | | |
| 49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04-9 | 임 | 794 | 794 | 탐진최 씨만전 공과중 중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527 | | | | |
| 50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416-14 | 전 | 150 | 150 | 이봉섭 외5인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4길 12 | | | | |
| 51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03-18 | 임 | 555 | 555 | 이봉섭 외5인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4길 12 | | | | |
| 52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415-29 | 대 | 17 | 17 | 문용두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어전길 72-3 | 동김제 농업협 동조합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2길 7 | 근저당, 지상권 | |
| 53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415-27 | 대 | 26 | 26 | 문용두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어전길 72-3 | 동김제 농업협 동조합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2길 7 | 근저당 | |
| 54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415-28 | 전 | 102 | 102 | 강조왕 녀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415-6 | | | | |
| 55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621 | 구 | 893 | 32 | 국 | 농수산부 | | | | |
| 56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415-25 | 답 | 98 | 98 | 이봉섭 | 김제군 금구면 월전리 414 | | | | |
| 57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415-18 | 도 | 23 | 23 | 등기없 음 |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 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58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414-3 | 전 | 123 | 123 | 이봉섭 | 김제군 금구면 월전리 414 | | | | |
| 59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414-2 | 도 | 50 | 50 | 등기없음 | | | | | |
| 60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415-1 | 전 | 350 | 118 | 이봉섭 | 김제군 금구면 월전리 414 | | | | |
| 61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415-26 | 답 | 98 | 98 | 이봉섭 | 김제군 금구면 월전리 414 | | | | |
| 62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415-19 | 도 | 93 | 93 | 온남섭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411 | | | | |
| 63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11-4 | 도 | 99 | 99 | 온병섭 | 전주시 효자동2가 218-19 | | | | |
| 64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12-4 | 도 | 86 | 86 | 등기없음 | | | | | |
| 65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97-7 | 임 | 36 | 36 | 장용구 |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1길 34(연지동) | | | | |
| 66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13-7 | 임 | 270 | 270 | 온성우외 4인 |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1가 296-2 4차현대아파트 401동 502호 | | | | |
| 67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14-7 | 임 | 96 | 96 | 한중석 | 전주시 서노송동 658-1 | | | | |
| 68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14-9 | 임 | 324 | 324 | 형병규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385 | | | | |
| 69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14-8 | 임 | 143 | 143 | 온성우외 4인 |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1가 296-2 4차현대아파트 401동 502호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70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15-1 | 임 | 2,380 | 245 | 온성우외 4인 |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1가 296-2 4차현대아파트 401동 502호 | | | | |
| 71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596-2 | 전 | 205 | 205 | 이순옥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365 | | | | |
| 72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596-24 | 전 | 52 | 52 | 선광주 |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만경공단2길 33 | | | | |
| 73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19-9 | 임 | 1,861 | 1,861 | 선광주 |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만경공단2길 33 | | | | |
| 74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20-3 | 임 | 637 | 637 | 시산경씨 직장공파 종중 | 김제군 금구면 월전리 310 | | | | |
| 75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28-16 | 임 | 437 | 431 | 김경자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대울2길 83 | 주식회사 하나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근저당 | |
| 76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28-18 | 임 | 84 | 84 | 김경자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대울2길 83 | 주식회사 하나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근저당 | |
| 77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26-15 | 도 | 10 | 10 | 김경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6, 405동806호 (평화동2가, 평화 주공아파트) | | | | |
| 78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26-20 | 대 | 16 | 16 | 김경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6, 405동806호 (평화동2가, 평화 주공아파트) | | | | |
| 79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26-14 | 도 | 7 | 2 | 김경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6, 405동806호 (평화동2가, 평화 주공아파트) | | | | |
| 80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98-3 | 전 | 54 | 54 | 김종철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21, 105동 101호 (남양사이버아파 트) | | | | |
| 81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99-9 | 답 | 554 | 554 | 시산경씨 태인진사 공파종중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54-3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82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99-10 | 전 | 165 | 168 | 한준석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물왕말4길 9, 204호 (서노송동,신동아파인빌 아파트) | 김제 농업 협동 조합 |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213-4 | 근저당 | |
| 83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00-4 | 잡 | 671 | 671 | 박상규 외1인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71, 101동 804호(운림동, 라인아파트) | | | | |
| 84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613 | 도 | 1,250 | 245 | 국 | 건설교통부 | | | | |
| 85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31- 12 | 임 | 151 | 151 | 박상규 외1인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71, 101동 804호(운림동, 라인아파트) | | | | |
| 86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610 | 도 | 774 | 5 | 국 | 건설교통부 | | | | |
| 87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51-9 | 대 | 104 | 104 | 오치석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월전2길 36-4 | 송천 신용 협동 조합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38 (송천동2가) | 근저당, 지상권 | |
| 88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51-6 | 대 | 8 | 8 | 공 | 김제시 | | | | |
| 89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51-10 | 대 | 56 | 56 | 한영분 | 월전1길 52 | 전주 농업 협동 조합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32 | 근저당 | |
| 90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51-7 | 대 | 33 | 33 | 공 | 김제시 | | | | |
| 91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51-8 | 답 | 258 | 258 | 김중순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60, 201동 802호 (서신동,서신2차광진산업 장미아파트) | | | | |
| 92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47-13 | 대 | 175 | 175 | 천정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5, 205동1003호 (전농동,래미안크레시티) | 주식 회사 우리 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근저당 | |
| 93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47-11 | 대 | 67 | 67 | 천정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5, 205동1003호 (전농동,래미안크레시티) | 주식 회사 우리 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근저당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 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94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48-8 | 도 | 63 | 63 | 도인후 외3인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105동2402호 (탄현동,두산위브 더제니스) | 서중 새마을 금고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4-2 | 근저당 | 지분 압류 |
| | | | | | | | | 서전주 새마을 금고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4-2 제일비사별 상가 108동 101호 | 근저당 | |
| | | | | | | | | 부안수 산업협 동조합 |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69-2 | 근저당 | |
| | | | | | | | | 중소기 업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 근저당 | |
| 95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47-9 | 대 | 35 | 35 | 박지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9-4 한홍빌라-304 | 부안수 산업협 동조합 |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69-2 | 근저당 | |
| 96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47-12 | 대 | 150 | 150 | 정현민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린산로 24, 105-705 (덕진동2가, 영무예다음) | 전주농 업협 동조합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85-1 | 근저당 | |
| 97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47-10 | 대 | 51 | 51 | 정영주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월전1길 14 | 전주농 업협 동조합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32 | 근저당, 지상권 | 경매 |
| 98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46-1 | 대 | 63 | 63 | 정영주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536 | | | | 압류, 경매 |
| 99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601-31 | 답 | 2,192 | 20 | 공 | 김제시 | | | | |
| 100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601-19 | 천 | 14,320 | 296 | 국 | 건설부 | | | | |
| 101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20-4 | 임 | 147 | 136 | 선광주 |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만경공단2길 33 | | | | |
| 102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20-6 | 임 | 609 | 609 | 시산경 씨직장 공과 종중 | 김제군 금구면 월전리 310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103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28-15 | 임 | 593 | 593 | 김인수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연동길 178 | | | | |
| 104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26-24 | 전 | 111 | 111 | 김경자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대율2길 83 | 주식회 사 하나은 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 근저당 | |
| 105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26-6 | 전 | 446 | 186 | 오영원 | 전주 완산구 중앙동1가 38-7 | | | | |
| 106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26-22 | 전 | 238 | 238 | 김경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6, 405동806호 (평화동2가, 평화 주공아파트) | | | | |
| 107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26-21 | 전 | 283 | 283 | 김경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6, 405동806호 (평화동2가, 평화 주공아파트) | | | | |
| 108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26-19 | 전 | 311 | 311 | 경용섭 |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6 장안타운 120-604 | | | | |
| 109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34-1 | 전 | 655 | 41 | 경은경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반기문로 45-15, 108동 1405호(금광 포란재아파트) | | | | |
| 110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25-3 | 답 | 18 | 18 | 문영권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350 | | | | |
| 111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24-3 | 답 | 1,550 | 17 | 경은수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358 | 동김제 농업협 동조합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479 | | |
| 112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23-9 | 답 | 250 | 250 | 김선벽 | 김제군 금구면 월전리 122 | | | | |
| 113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23-8 | 답 | 394 | 394 | 김선벽 | 김제군 금구면 월전리 122 | | | | |
| 114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23-1 | 답 | 387 | 387 | 이순옥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365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115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300-3 | 답 | 466 | 466 | 박준석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66-1 거성고속맨션 2차 611호 | | | | |
| 116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68-6 | 답 | 434 | 434 | 경진성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85-1 효성흑석마을아파트 에이-709 | | | | |
| 117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68-5 | 답 | 354 | 354 | 오봉운 외4인 | 김제군 금구면 월전리 365 | | | | 압류 |
| 118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609 | 구 | 17,507 | 2,473 | 국 | 농수산부 | | | | |
| 119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51-5 | 답 | 202 | 202 | 공 | 김제시 | | | | |
| 120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611 | 도 | 1,002 | 31 | 국 | 건설교통부 | | | | |
| 121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44-2 | 답 | 117 | 117 | 김선호 | 김제군 금구면 월전리 124 | | | | |
| 122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43-1 | 답 | 66 | 66 | 김요한 외1인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1길 46, 103동 601호 (삼천동1가, 흥건삼천1 차아파트) | 농협 은행 주식 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 근저당 | |
| 123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245-1 | 임 | 98 | 98 | 오현구 | 김제군 금구면 월전리 206 | | | | |
| 124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601-32 | 답 | 221 | 1 | 공 | 김제시 | | | | |
| 125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601-33 | 답 | 2,248 | 206 | 공 | 김제시 | | | | |
| 126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190-3 | 임 | 151 | 151 | 최규봉 | 전주시 금암동 523-1 | | | | |
| 127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 산128-16 | 임 | 437 | 437 | 김경자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대울2길 83 | 주식 회사 하나 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 근저당 | |

☑ 수용되거나 사용할 지장물의 조서

| 일련 번호 | 토지소재지 | | 지번 | 지목 | 지장물명 | 구조 및 규격 | 면적 수량 | 단위 | 물 건 소 유 자 | | 비고 | |
|----------|-------|----|--------|----|-------|------------|----------|----------------|------------------------|--|-------|--|
| | 면 | 리 | | | | | | | 성 명 | 주 소 | | |
| 1 | 금구 | 금구 | 산 26 | 도 | 안내판 | 경량철골 | 1 | 개소 | 농업회사법인 코엔에프 유한회사 | 김제시 금구면 봉두로 148-22 | | |
| 2 | 금구 | 금구 | 204-12 | 진 | 계량기 | | 1 | 개소 | 농업회사법인 코엔에프 유한회사 | 김제시 금구면 봉두로 148-22 | | |
| 3 | 금구 | 금구 | 204-12 | 진 | 담장 | 블록 | 1 | 식 | 농업회사법인 코엔에프 유한회사 | 김제시 금구면 봉두로 148-22 | | |
| 4 | 금구 | 금구 | 203-4 | 장 | 조립식건물 | | 198 | m ² | 농업회사법인 코엔에프 유한회사 | 김제시 금구면 봉두로 148-22 | | |
| 5 | 금구 | 월전 | 415-28 | 진 | 가옥 | 함석 | 82 | m ² | | 강조왕녀 | 415-6 | |
| 6 | 금구 | 월전 | 299-9 | 답 | 가구조물 | | 102 | m ² | 시산경씨 태인진사 공파중증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54-3 | | |
| 7 | 금구 | 월전 | 299-9 | 답 | 컨테이너 | | 2 | 개소 | 시산경씨 태인진사 공파중증 |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54-3 | | |
| 8 | 금구 | 월전 | 247-13 | 대 | 간판 | | 1 | 개소 | 천정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5, 205동1003호(전농동,래미안 크레시티) | | |
| 9 | 금구 | 월전 | 247-11 | 대 | 간판 | | 1 | 개소 | 천정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5, 205동1003호(전농동,래미안 크레시티) | | |
| 10 | 금구 | 월전 | 247-9 | 대 | 간판 | | 1 | 개소 | 박지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9-4 한흥빌라-304 | | |
| 11 | 금구 | 월전 | 247-12 | 대 | 간판 | | 1 | 개소 | 정현민 |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24, 105-705 (덕진동2가,영무예다움) | | |

도보이용안내

도보 이용 안내

- ☞ 도보는 매주 금요일자로 발행됩니다.
- ☞ 도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도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도보는 <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접속
 - 인기검색어 → 전북도보
 - 자치법규 → 전북도보
 - 도정정보 → 도정자료 → 전북도보

도보게재 의뢰 안내

- ☞ 근거법규 : 전북도보발행규정 제11조 및 도보게재위탁계약서 제3조
- ☞ 원고 접수 마감 : 매주 화요일
- ☞ 도보게재 의뢰 방법
 1.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 문서사송 혹은 FAX(063-280-2299)
⇒ 개별법령별 도보게재 근거 법규를 명시
 - 예시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조제○항근거
 2. 게재문안(공문 첨부물) 1부
 - 도청 실, 과, 사업소, 시·군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송부하시고
 - 기타 도보위탁게재 계약기관은 USB메모리로 제출하거나
E-mail(jbdobo@korea.kr)로 보내주셔야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